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2022. 12.

정재호 · 정다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2022. 12.

정재호 · 정다운

서 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45여 년 동안 10%로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시행되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또는 소비자들 간 경제적 비효율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물론이고 새롭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 후 기존 연구방법에서의 추정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과 정다운 부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홍익대학교의 성명재 교수와 박명호 교수, 기획재정부 한재용 서기관, 그리고 익명의 심사논평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원의 김학효 연구원과 원고 교정을 맡아 준 연구출판팀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22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물론이고 새롭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45여 년 동안 10%로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도 국가별로 추구하는 정책 목적, 사회 경제적 환경, 국민들의 인식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산업별·업종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면 경제적 비효율의 왜곡이 산업 전반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왜곡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이 중요하다. 또한 최종 소비자마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유효세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생필품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실제 상대적 부담의 정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을 살펴보는 것은 면세 범위의 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는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자주 이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은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한다.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최종 거래 단계까지 포함되는 중간 과세 거래 및 면세 거래의 비중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이처럼 과세와 면세 거래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산업연관표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알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연계가 필요한데,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연관표에서 가구는 목재가구, 철제가구 등 가구 산업이 중요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는 소파, 식탁, 책상, 의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둘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면세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가 발생하면 모두 전가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분석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산업연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도 포함할 수 없었다.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그동안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기존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다른 세목들의 유효세율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추정되었다.

국세청 신고자료에는 면세로 인해 가격 전가는 물론 의제매입세액, 각종 공제제도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선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업종 구분을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연계시키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다만 국세청 신고자료에는 거래단계별 면세 업종의 사용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신고자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자료이기에 여기에 고의적 혹은 실수로 신고 누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신고 오류에 의해 혹은 탈세 등으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의 방법론에서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중간 거래 단계의 세 부담 전가, 가격 전가, 그리고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각종 공제 제도의 영향 등을 고려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법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보다 크게 산출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실제로는 세 부담 전가는 본고에서 제시한 부담 정도보다 훨씬 크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일부 세 부담을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정부 정책의 개입이 없었다면, 실제 유효 세 부담은 훨씬 더 크게 추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저소득 계층 혹은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유효세율 추정을 보다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을 추정된 결과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소비자의 소득, 소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특징에 따른 이질성 분석 결과 해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의 방법론에서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어, 각 방법론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소득수준별로 이질적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가 생필품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혜택

은 고령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고, 그다음으로는 20대의 젊은 연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30대에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출산과 육아라는 특징이 있지만 의료비와 영육아용 기저귀와 분유, 양육 등의 가사서비스는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 중에 있다. 소비 지출항목을 분석한 결과, 30대는 음식·숙박비, 의류·신발,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과세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녀 교육 소비 지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30대에 비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은 작게 나타났다.

20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 낮게 추정되었다. 2020년에 20대의 소비 구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음식·숙박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유효세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명목 유효세율 추정에서는 관찰하기 어렵다.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유효세율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증가하여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를 최고점으로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령대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부담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근래 들어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도 전체 가구 분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은 7% 정도로, 다른 가구원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앞선 연령대별 분석에서 살펴본 70대 이상의 고령층 및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의 유효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직면하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면세제도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면세제도 조정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비지출을 경제적 능력으로 간주하고 소비 지출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 분위별 분석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기존 연구방식을 사용했을 때 소비수준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비수준이 낮은 계층의 유효세율이 뚜렷하게 작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가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고 과·면세가 혼재된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로 혹은 면세로 가정해서 과세인 경우와 면세인 경우 각각 명목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추정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면세 재화를 과세 재화로 전환하였을 때의 소득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그리고 소비지출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과·면세 분류가 애매한 경우 모두 면세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의 감소 폭은 저소득일수록 단조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이들 품목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떠안는 세 부담의 크기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면세 전환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단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면세 구분이 애매한 경우 면세로 전환할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유효세율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의료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효 세 부담의 결과 값이 달라졌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정책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명목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 완화 및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면세로 혹은 면세 재화를 과세로 전환할 때 거래단계, 재화의 성격, 소득수준, 소비연령 및 가구원 구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방법과 본고의 방법을 통해 추정한 유효세율의 크기를 소분류 품목별로 소비자의 이질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애완동물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은 두 방법 모두 동일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미미하지만 더 크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외래의료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에도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가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훨씬 더 크게 계산된다. 따라서 의료비의 실질적 부담 정도가 예상된 수준보다 더 크고, 그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육류구입, 곡물구입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절대적인 부담의 크기도 기존에 비해 더 크게 추정됨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일부 왜곡을 정부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반면 성인학원비, 학원보습교육비 등 면세 대상인 사교육은 고소득 계층에서의 수요가 더 커서 면세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본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부담은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도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사교육의 면세로 인해 고소득 계층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서 각각 추정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각 방법별 유효세율 변화에는 큰 차

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명목 유효세율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종 소비 금액과 과·면세 지출 구성을 통한 명목 유효세율의 추정 은 실제 세 부담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같은 대분류 산업군이라고 해도 30년의 기간 동안 그 구성이 변화하고 규모가 달라져서 정확하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하면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명목세율인 10% 내외에 분포해서 산업별 부가가치세 세 부담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업들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일반 품목들로 구성된 산업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축소(과세 범위 확대)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면세 재화보다 과세 재화의 소비 비중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은 해당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면세 재화보다 과세 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농림수산물, 광산물, 그리고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감소하고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990년에는 4.62%였는데, 2019년에는 2.40%까지 감소하였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군의 면세 범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의 비중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여겨진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연구 수행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과거의 부가가치세제도 운용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의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이유는 중간 거래 단계의 가격 전가 및 세 부담 전가,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각종 공제 제도의 영향 등의 행태가 모두 반영된 국세청 신고자료의 활용과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유효세율 추정 가능성을 통해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분석 결과, 중간 거래 단계의 가격 전가 및 세 부담 전가가 예상보다 클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등의 각종 공제 제도로 인해 일부 세 부담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가격 및 세 부담 전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공제 제도는 결국 중간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저소득 계층 등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이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9

II.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현황 25

 1. 부가가치세 세제 현황 25

 가. 개요 25

 나. 부가가치세 세수 26

 2. 부가가치세 면세 29

 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29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면세 31

 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변천 34

 3. 주요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비교 36

 가. 일반적인 OECD 회원국 면세 36

 나. EU 37

 다. 일본, 호주 등 38

 라. 시사점 40

III.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방법과 추이 분석 42

 1. 개요 42

 2.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44

 가. 완전 과세거래 상황 44

 나. 중간 단계 면세 거래 상황 46

 다. 면세 거래 및 사업자 전가가 발생한 상황 48

 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포함된 상황 49

 3.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정의 및 추정방법 51

가. 기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방법	53
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새로운 추정방법	57
4. 산업 및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63
가.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산업연관표)	64
나. 사업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국세통계연보)	72
IV.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85
1.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산출	86
가. 분석자료	86
나. 가계동향조사 기초 통계	89
2.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유효세율	92
가. 가계동향조사 소비항목별 유효세율 비교	92
나. 소비자의 명목 부가가치세 부담	93
다. 소비자 부가가치세 부담의 유효세율(Gottfried and Wiegard(1991) 방법)	101
라. 소비자 부가가치세 부담의 유효세율(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06
3. 소결	110
가. 방법론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비교	110
나. 소득수준별 품목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비교	114
V. 요약 및 결론	119
참고문헌	127
부록	129

표목차

〈표 II-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30
〈표 II-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31
〈표 II-3〉 부가가치세 과·면세 변천	35
〈표 II-4〉 OECD 회원국 공통 면세 대상과 우리나라 비교	37
〈표 II-5〉 EU VAT Directive의 면세 대상	38
〈표 II-6〉 해외 주요국 과·면세 대상	39
〈표 II-7〉 OECD, EU,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요 품목 비교	40
〈표 III-1〉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의 예시	45
〈표 III-2〉 2010~2019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65
〈표 III-3〉 1990~2019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70
〈표 III-4〉 법인사업자 매출, 매입과세표준, 부가가치 및 실 세수	72
〈표 III-5〉 법인사업자 업종별 유효세율 크기	73
〈표 III-6〉 법인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	74
〈표 III-7〉 일반사업자 매출, 매입과세표준, 부가가치 및 실 세수	76
〈표 III-8〉 일반사업자 업종별 유효세율 크기	77
〈표 III-9〉 일반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	78
〈표 III-10〉 일반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개별 납세자료)	79
〈표 III-11〉 일반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개별 납세자료, 상하 5% 제외)	80
〈표 III-12〉 간이사업자 매출, 매입과세표준, 부가가치 및 실 세수	84
〈표 IV-1〉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득 분류	86
〈표 IV-2〉 가계동향조사 가계지출 분류	87
〈표 IV-3〉 가계동향조사 비교표	88
〈표 IV-4〉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소비	90

〈표 IV-5〉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등의 지출	90
〈표 IV-6〉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95
〈표 IV-7〉 최종 소비자의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96
〈표 IV-8〉 최종 소비자의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97
〈표 IV-9〉 최종 소비자의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98
〈표 IV-10〉 최종 소비자의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99
〈표 IV-11〉 최종 소비자의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표준편차	100
〈표 IV-12〉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1
〈표 IV-13〉 Gottfried and Wiegard(1991)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2
〈표 IV-14〉 Gottfried and Wiegard(1991) 연령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3
〈표 IV-15〉 연령대별 지출 비중	103
〈표 IV-16〉 Gottfried and Wiegard(1991)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4
〈표 IV-17〉 Gottfried and Wiegard(1991)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5
〈표 IV-18〉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6
〈표 IV-19〉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7
〈표 IV-20〉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연령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8
〈표 IV-2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09
〈표 IV-2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110
〈표 IV-23〉 소득수준별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전체 부담 대비 일부 과세 품목의 부가가치세 비교	117
〈표 IV-24〉 소득수준별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전체 부담 대비 일부 면세 품목의 부가가치세 비교	118

그림목차

[그림 II-1]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	27
[그림 II-2]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27
[그림 II-3] 국세 세수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28
[그림 II-4] OECD 주요 회원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29
[그림 III-1] 주요 대분류 품목군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69
[그림 III-2]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및 사업자 매출과표	81
[그림 III-3]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및 사업자 매출과표(매출액 5억원 이하)	82
[그림 IV-1] 소비자의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111
[그림 IV-2] 소비자의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112
[그림 IV-3] 소비자의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112
[그림 IV-4] 소비자의 소비수준별 유효세율 비교	113

I. 서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면서 이런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가가치세 세율 개편보다는 부가가치세제 왜곡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 조정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등이 반영된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궁극적인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공제제도 등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 10%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거래와 달리 면세거래가 거래 과정에 포함될 경우, 최종 소비자마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생필품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실제 상대적 부담의 정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변화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의 소비 형태가 달라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괴리가 산업별·업종별로 크게 난다면 경제적 비효율의 왜곡이 산업 전반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왜

곡 현상을 파악하고 면세 범위의 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한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자주 사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추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업연관표의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도출하고, 이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을 분석한다. 이런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접목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연구인 박명호·정재호(2014)에서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추정한다. 이 방법론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앞서 기존 연구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존 연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과 비교 분석한다. 그동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제약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시도하였다는 데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할 수 없어서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의 정의는 다른 세목에서 정의하는 실효세율 혹은 유효세율과 개념상 차이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최종 소비자가 최종 거래 단계에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모든 거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하여 계산한다. 다른 세목에서는 실제 부담하는 납부세

액을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것과 외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품목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중간 거래 단계의 세 부담 전가, 가격 전가, 그리고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각종 공제 제도의 영향 등을 고려한 방법이다. 최종 단계에 혹은 중간 단계에 면세 거래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효세율 추정에는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공제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방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과소 혹은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기존 연구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비교한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는 절대적 수치 비교와 함께 소비자의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그리고 소비수준별 등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면세되는 주요 소비 품목인 의료비, 교육비, 식료품비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비교한다. 두 방법 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를 통해 새롭게 고려된 중간 거래 단계의 사업자들의 세 부담 혹은 가격 전가의 정도, 그리고 공제제도의 영향 등을 가늠해 보고, 이를 통해 실제 과거에 포착하지 못한 세 부담 전가의 정도가 예상보다 큰지, 그리고 정책당국이 취약계층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등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고 과·면세가 혼재된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 혹은 면세로 가정해서 과세인 경우와 면세인 경우 각각 명목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추정한다. 이 분석을 통해 면세 재화를 과세 재화로 전환하였을 때의 소득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소비지출별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또한 앞서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추정치와도 비교한다.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박명호·정재호(2014), 성명재(2013), 김유찬(2013; 2016)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동안 일반 연구자들이 국제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명호·정재호(2014)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각각 추정하였다. 생산자 부문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은 Gottfried and Wiegard (1991)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계산하였다. 산업별 분석을 통해 면세 거래가 많은 산업부문의 유효세율을 추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관찰하였다. 소비자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들과 산업연관표를 연결하였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역진성 부담이 경제적 능력의 측정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측정한 경우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측정한 경우 유효세율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달라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서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성명재(2013)에서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과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를 추정하고, 면세범위 조정에 따른 형평성 및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세율이 낮고 면세 소비 비중이 높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0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세수 증대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 목적의 의료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 출판 등을 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유찬(2013)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품목별 유효부가가치세율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2008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유효부가가치세율을 계산하였다. 한국과 독일에서 공통적

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유효부가가치세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제에 큰 효율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유찬(2016)에서는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 한국,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별 유효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VAT Gap도 추정하였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추정했고, 또한 이를 기존 연구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과 비교 분석한다는 점이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없었지만, 이 둘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이번이 처음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제 및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대해 기술한다. 부가가치세 세수 변화 추이 등 분석,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분석, 지난 30여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변천, 그리고 OECD 기준,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등을 비교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정의 및 추정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기존의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산출방법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산출방법을 제안한다. 산업연관표 기본분류 기준 발표 연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고, 『국세통계연보』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법인, 일반,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을 추정한다. 우선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고 과·면세가 혼재된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 혹은 면세로 가정해서 과세인 경우와 면세인 경우 각

각 명목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한편 기존 방법에 의해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 항목을 연계하고,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효 세 부담을 산출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여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그리고 소비수준별로 기존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현황

본 장에서는 부가가치세제 및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대해 기술한다. 부가가치세제 개요, 부가가치세 세수 변화 추이 등 분석,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분석, 그리고 지난 30여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변천을 조사하고 다음 장에서 분석할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분석에 활용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비교한다. OECD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및 부가가치세제가 발달한 EU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함께 비교 분석한다.

1. 부가가치세 세제 현황

가. 개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1977년에 기존의 영업세, 유흥음식제 등의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며 시작되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재정 당시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3%였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탄력세율의 하한인 10%를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1988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탄력세율제도는 폐지하였고 탄력세율인 10%를 부가가치세율 기본세율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1977년에 재정된 부가가치세율 10%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기본세율 이외에 감경세율 등 복수세율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세율 10% 단일세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유럽 국가 등의 부가가치세제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세액공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부과되고 징수되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공급자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상대방에게 징수하고, 생산을 위해 투입된 중간 투입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과정이 지속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중간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거래 중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중간 투입물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면세 정책 의도와는 달리 거래 과정에서 면세된 부분이 다시 과세되어 부가가치세가 환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다음 거래 단계에 전가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복과세 현상의 배경으로는 이미 과세가 된 면세 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포함되어 과세됨에 따라 나타나는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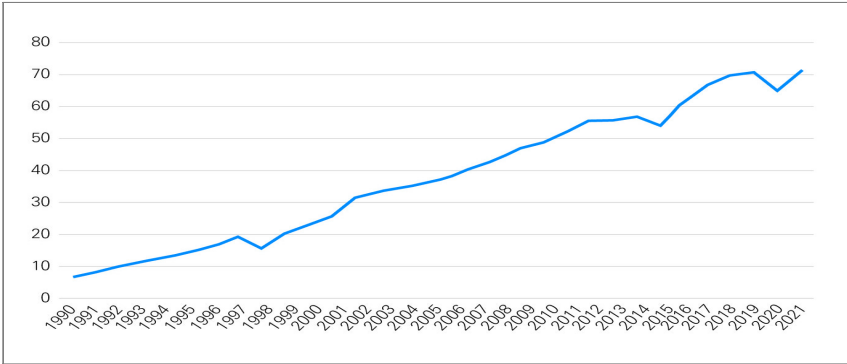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왜곡(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최소한으로 최종단계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세수

부가가치세 세수는 그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에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7조원이었는데 1997년에 20조원을 넘어섰고, 2007년에 40조원을 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70조원에 이르면서, 1990년 이후 30여 년 동안에 부가가치세 세수가 7조원에서 70조원으로 10배 증가하였다.

[그림 II-1]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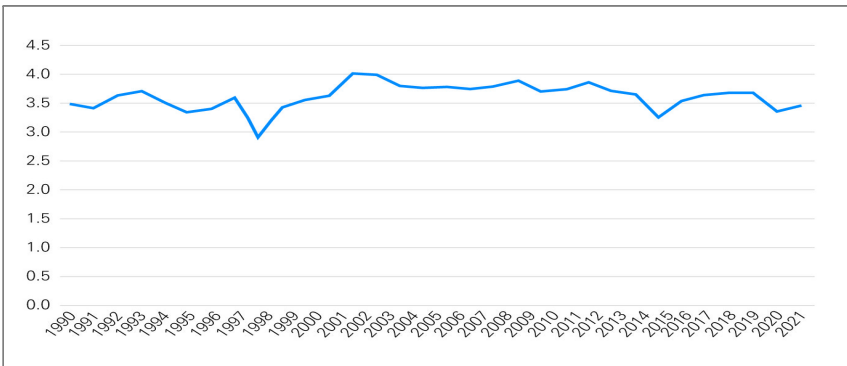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검색일자: 2022. 3. 7.

부가가치세 세수의 명목금액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약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4%를 정점으로 2021년에는 3.4%로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수도 비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2]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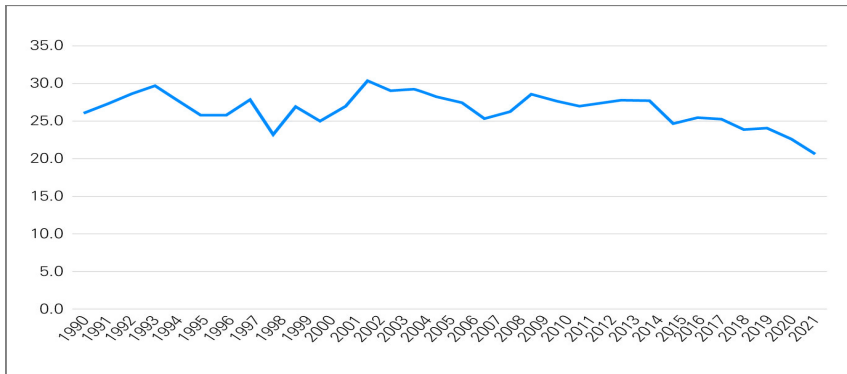
주: GDP는 명목GDP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국내총생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검색일자: 2022. 3. 7.

국세 세수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약 20.7%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2년 국세 세수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30.4%로 정점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로 국세 세수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른 국세 세수의 증가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수의 증가가 더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II-3] 국세 세수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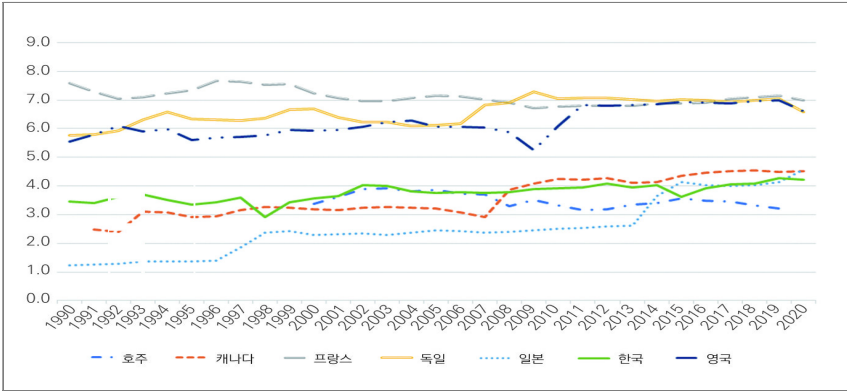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dx_cd=1124, 검색일자: 2022. 3. 7.

OECD 주요국들 중에서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최근 3.5% 수준인데, 이는 캐나다,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이후에 그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회원국들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7% 수준으로 한국보다 높다. 그 이유는 EU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20%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4] OECD 주요 회원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단위: %)



주: 5111 Value added taxes의 비중이며, 일부 국가(호주, 캐나다)의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에서 제외한 후 그래프를 작성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2. 3. 7.

2.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운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는 공통적인 부문도 있지만, 국가별 정책 목적 및 경제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재화 및 용역의 수요가 감소해서 국민 후생과 사회적인 혜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박물관 등의 입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표 II-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나. 석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희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 II-1〉의 계속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검색일자: 2022. 5. 24.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면세

「부가가치세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추가되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제106조의2),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3)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면제 시한(일몰)을 두고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 위탁급식, 국민주택, 경비 관리용역,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철도시설, 학교 기숙사, 시내버스 여객운송 및 천연가스·전기시내버스 공급, 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 등이 있다.

〈표 II-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표 II-2〉의 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 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3. 농업업 경영 및 농업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표 II-2〉의 계속

-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표 II-2〉의 계속

1. 무연탄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9.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송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2. 5. 24.

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변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한 커다란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꾸준히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전기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실시된 것들이다. 반대로 미용 및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민간사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체국 쇼핑(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대행 용역 과세, 해외 오픈마켓(구글,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전자적 용역(게임, 소프트웨어 등)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등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면세 범위 변화는 추후 논의할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도출에도 반영하여 사용된다.

다음은 2011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표 II-3〉 부가가치세 과·면세 변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2014년 말까지) –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 촉진을 지원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이나,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면제로 전환 •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추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4년 말까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15년 말까지)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어업기계 중 화물차(1톤 이하), 경운기, 트랙터 추가 • 천연가스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2015년 말까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 범위 확대 – 피부 관련 시술(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 교정술이 과세대상에 추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해외 오픈마켓(구글·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전자적 용역(게임, 소프트웨어 등)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18년 3월 말까지) – 시외버스 등 유사한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 감안(우등 고속버스는 과세) • 시내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7년 말까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7년 말까지) •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는데, 인터넷 신문 구독료도 추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교육용역 면세 대상 기관에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 추가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 – 기존 미술, 음악, 사진에 연극, 무용을 면세 예술창작품에 추가 •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7년 말까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주문 판매대행 용역 과세 – 등기배송을 전제로 우체국 쇼핑(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대행 용역 과세 –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공급 용역에 대해 과세하려는 목적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에 액상형 분유 추가 – 기존에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대상이었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0년 말까지) • 시내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0년 말까지)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0년 말까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0년 말까지)

〈표 II-3〉의 계속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2020년 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촉진 목적 • 해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목적 -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과세 대상에 추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 적용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2년 말까지)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3년 말까지) • 천연가스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3년 말까지)

자료: 기획재정부, 『2011 간추린 개정세법』~『2020 간추린 개정세법』, 2011~2020.;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1. 7. 2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주요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비교

가. 일반적인 OECD 회원국 면세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면서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일반적인 공통 분야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재화 및 용역의 수요가 감소해서 사회적인 혜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스포츠, 문화서비스(라디오 및 TV방송 제외),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 환자수송, 병원 및 의료, 혈액·근육·장기, 치과의료 등이 있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자선활동, 비영리 조직이 수행하는 비상업적 활동, 일부 특정한 기금모금행사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교육,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와 함께 대부분 정부에서 발행 또는 통제하는 마권·복권 및 도박, 그리고 부가가치 그 자체로 금융서비스, 토지 및 건물 공급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면제하는 분야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라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분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 등,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민을 위해 농·어업용 유류, 농림축수산물(미가공 식료품) 등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장례사업, 도서, 신문 및 잡지, 방송, 그리고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등이 있다. OECD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우표, 저가담배,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스포츠 경기 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 작업대행용역,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천연가스, 전기 및 수소사용 시내버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표 II-4〉 OECD 회원국 공통 면세 대상과 우리나라 비교

구분	면세 대상
OECD 회원국 (common exe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서비스, 스포츠, 문화서비스(라디오 및 TV방송 제외) • 환자수송, 병원 및 의료, 혈액·근육·장기, 치과의료 • 자선활동, 비영리 조직이 수행하는 비상업적 활동, 일부 특정한 기금모금행사 • 교육,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 • 마권·복권 및 도박 • 금융서비스, 토지 및 건물 공급
공통 면세 이외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면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여객운송용역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 농·어업용 유류 • 장례사업 • 특정 인적용역 • 도서, 신문 및 잡지, 방송 • 농림축수산물(미가공 식료품)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0," 2020. 12., p. 82; p. 85

나. EU

EU는 VAT 관련 EU 지침(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에서 VAT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 제132조에는 공익을 위한 특정 활동에 대한 면제

대상이, 제135조에는 기타 사적활동에 대한 면제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공익 목적 활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분야에는 우편,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직업훈련, 비영리 단체의 스포츠 서비스, 환자 이송, 공영 라디오 및 TV 방송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 목적 활동 외에 보험 및 재보험, 신용 관리, 결제 수단 거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급, 부동산 임대 등도 기타 활동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¹⁾

〈표 II-5〉 EU VAT Directive의 면제 대상

구분	분야
공익활동	공공 우편 서비스, 공적인 기관이 행하는 의료, 전문적인 의료 행위, 인체 기관·혈액·모유 공급, 치과 보철물 공급,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청소년 보호 관련 서비스의 공급, 공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직업훈련, 종교 단체의 직원 제공,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또는 체육교육, 공적인 기관이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 환자 이송, 공영 라디오 및 TV 활동 등
기타활동	보험 및 재보험, 신용 공여 및 신용 관리, 신용 보증, 결제 수단 거래(예금, 수표, 부채, 기타 결제 수단 등), 법정 화폐의 거래, 회사 지분 거래, 복권 및 기타 형태의 도박,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공급, 건축용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급, 부동산 임대 등

자료: EUR-Lex, “32006L01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6L0112>, 검색일자: 2022. 6. 28.

다. 일본, 호주 등

일본은 OECD 표준면세(Common exemption) 분야에 더해 사회 복지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비 공급, 행정 서비스, 유가증권, 교과서 등을 추가로 면세하고 있다. 반면 OECD 표준면세 분야 중 우편 서비스, 건물의 공급, 비영리 단체 외의 기관이 제공하는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상업적 목적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주는 OECD의 표준면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로서 금융 서비스, 주거 목적의 임대,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내 매점, 자선 단체에서 행하는 기금 모금 행사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반면 OECD 표준

1) EUR-Lex, “32006L01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6L0112>, 검색일자: 2022. 6. 28.

면세 분야와 달리 우편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종교를 제외한 문화 서비스, 건강 보험을 제외한 보험 및 재보험, 복권이나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영국은 OECD 표준면세 외에 스포츠 대회, 예술작품 등을 면세하고 있으며, 신축 상업용 건물의 판매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표 II-6〉 해외 주요국 과·면세 대상

국가	면세 분야	표준면세 중 과세 대상 분야
호주	금융 서비스, 주거 목적의 임대,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내 매점, 자선 단체에서 행하는 기금 모금 행사 등	국내 우편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종교를 제외한 문화 서비스, 건강 보험을 제외한 보험 및 재보험, 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의 공급 등
일본	표준면세, 사회 복지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비 공급, 행정 서비스, 유가증권, 교과서 등	우편 서비스, 건물의 공급, 비영리 단체 외의 기관이 제공하는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상업적 목적의 부동산 임대 등
이탈리아	표준면세, 장례 서비스	토지의 공급 및 임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특정 사회 부조 서비스 등
프랑스	표준면세, 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물, 묘지 등의 건설·개보수, 상품의 선물 거래 등	부동산 임대, 행정 증명서 등이 없는 사람이 수행하는 환자 이송 서비스,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서비스, 영화관, 콘서트 및 극장
영국	표준면세, 스포츠 대회, 예술작품 등	신축 상업용 건물의 판매 등
독일	표준면세	-
한국	표준면세, 특정 대중교통, 수도, 연탄 및 무연탄, 농업 및 어업에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장례, 책, 신문 및 잡지, 방송 서비스, 농림수산업물의 공급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 및 공급, 상업적 목적의 문화 서비스, 허가된 도박 시설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0," 2020. 12.를 참고하여 일부 발췌 및 저자 작성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OECD, EU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요 품목을 비교한 자료를 가장 최근의 규정을 반영하여 살펴본 결과, 15개 품목 구분 중 과세되는 품목은 OECD와 EU가 10개(저율 과세 및 일부 과세 포함), 우리나라는 5개(일부 과세 포함)로 나타났다.

〈표 II-7〉 OECD, EU,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요 품목 비교

구분		OECD 공통면세	EU	한국
기초생활품	미가공식료품	과세	저율과세	면세
	가공식료품	과세	저율과세	과세
	수도	과세	저율과세	면세
	연탄 및 무연탄	과세	과세	면세
	여객운송	과세	저율과세	면세 · 과세
	주택임대	면세	면세	면세
국민후생 문화관련	의료	면세	면세	면세
	미용목적 의료	과세	과세	과세
	교육	면세	면세	면세
	도서 및 신문	과세	저율과세	면세
	방송	과세	면세	면세
	예술창작품	과세	과세	면세
부가가치 생산요소	토지	면세	면세 · 과세	면세
	금융 및 보험	면세	면세	면세 · 과세
	인적용역	과세	과세	면세 · 과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4. 부가가치세』, 2017. 6., p. 115, [표 28];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0,"; EUR-Lex, "32006L01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6L0112>(검색일자: 2022. 6. 28.)를 참고하여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라. 시사점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별로 그 범위가 상이한데, 그 이유는 국가별로 추구하는 정책 목적, 사회·경제적 환경, 국민들의 인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범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넓다고 해서 이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과세되는 일반 재화 또는 용역들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분야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분야로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이 있다. 서민경제, 사회적 배려, 에너지자원절약 등 여러 측면에서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이유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시내버스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공급가액이 상승하거나 혹은 시내버스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민경제 측면에서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다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결국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될 수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연탄 및 무연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역시 저소득층 지원 등을 고려한 제도이다. 하지만 탄소배출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연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연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그만큼 재정적으로 저소득층에 연료비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더 적절한 정책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은 서민경제, 국민후생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들의 공통 면세 대상과 부가가치세제도를 가장 많은 국가들에서 실행하는 EU의 면세 대상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공공성보다는 상업적 목적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축소하고,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축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세제가 아닌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Ⅲ.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방법과 추이 분석

1. 개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10%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당시부터 명목세율은 10%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면세 범위 조정, 각종 공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부담 규모는 연도별로 변화가 있었다.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명목세율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거래 단계에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과된다. 전 단계거래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완전히 환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다. 과세 당국이 걷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거래 단계에서의 공급가액의 10%이며, 최종 거래단계의 대상인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가 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징수 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역할만 한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 즉 공급대가를 전부 사업자 본인의 매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격 표시 방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급가액과 판매세를 별도로 표기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공급가액과 세금을 분리하여 인지하고, 이를 경제적 선택에 반영한다(Chetty et al., 2009).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표시제를 규정한 법에 따라 공급대가만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의

식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0원이며, 소비자만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가액에 10%만큼 세 부담을 갖지만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최종 소비자에게 있다.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거래와 달리 면세거래가 포함될 경우, 최종 소비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크기는 전체 소비 지출액의 10%가 아닐 것이다. 최종 거래 단계에서 면세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자가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는 0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최종 소비자가 지출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액은 재화 및 서비스 지출금액, 즉 총 공급가액의 10%를 하회할 것이다.

최종 소비자마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유효세율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과세 재화 위주의 소비를 한 최종 소비자라면, 전체 소비 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근접할 것이며, 면세 재화 위주의 소비를 한 최종 소비자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 생필품 등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 내역 가운데 생필품 등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실제 상대적 부담의 정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실증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을 살펴보는 것은 면세 범위의 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는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유효세율을 살펴보기 위해 최종 소비자의 소비 구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중간 단계에서 면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명목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 단계의 면세가 최종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에 있어 중요하다. 정

부가 면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면세 거래가 중간 단계에 포함되든, 최종 단계에 포함되든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중간 단계에 면세 거래가 포함되었을 때,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의 변화 방향 및 규모의 크기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각종 공제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들의 세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세율 추정에는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공제제도 전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고려를 종합하여 기존에 자주 사용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추정방법에 더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한다. 새로운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 부담 분석까지 진행한다.

2.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면세 거래가 포함된 경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예인 <표 Ⅲ-1>을 살펴본다. 참고로 본 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유효세율의 개념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세 부담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나, <표 Ⅲ-1>의 예에서는 편의상 각 거래 단계의 납부 세금과 부가가치를 비교한 세율을 유효세율로 간주하고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들까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1>의 분석 목적은 면세 거래가 포함될 경우, 세 부담이 달라지는 과정을 예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표 Ⅲ-1>에 정상적인 상황과 예외적인 거래 단계(면세 거래)가 포함된 경우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가. 완전 과세거래 상황

첫 번째, 완전한 과세거래 상황을 검토한다(Panel A). 이 거래에서는 매 거래 단계마다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되고, 중간 단계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금액은 매입세액을 통해 공제가 되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모든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표 Ⅲ-1>의 거래에는 3개의 사업자와 최종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정의하는 유효세율은 사업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 대비 실제 납부세액을 의미한다.²⁾ 완전한 과세거래 상황에서 사업자 A1은 1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납부세액의 크기는 10원이다. 따라서 사업자 A1 거래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0%이다.³⁾ 사업자 B1, C1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제에서 창출한 총 부가가치는 200원이며, 과세 당국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수는 20원이며, 전체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0%로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과 동일하다. 어떠한 왜곡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세율과 명목세율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 Ⅲ-1>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의 예시

(단위: 원, %)

구분	매입 가액	부가 가치	공급 가액	명목 세율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공급 대가	유효 세율
Panel A. 완전 과세거래 상황									
A1	0	100	100	10	10	0	10	110	10
B1	100	50	150	10	15	10	5	165	10
C1	150	50	200	10	20	15	5	220	10
최종 소비자			200				20		10
국세청		200			45	25	20		10

- 2) 다음 절에서 논의할 Gottfried and Wiegard(1991)와 박명호·정재호(2014)의 유효세율 개념과는 다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0%이다.
- 3) 사업자 A1은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0원이다. 따라서 이 사업자가 직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0이다. 단 본문의 예에서는 각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 실제 납부액과 부가가치를 비교하여 세율을 계산한다.

〈표 III-1〉의 계속

(단위: 원, %)

구분	매입 가액	부가 가치	공급 가액	명목 세율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공급 대가	유효 세율
Panel B. 중간 단계에서 면세 거래가 포함된 상황									
A2	0	100	100	10	10	0	10	110	10
B2	100	50	160	0	0	-	0	160	0
C2	160	50	210	10	21	-	21	231	42
최종 소비자			210 (200)				21		10 (10.5)
국세청		200			31	0	31		15.5
Panel C. 중간 단계에서 면세 거래가 포함된 상황+C3 사업자도 전가									
A3	0	100	100	10	10	0	10	110	10
B3	100	50	160	0	0	-	0	160	0
C3	160	50	226	10	22.6	-	22.6	248.6	87.3
최종 소비자			226 (200)				22.6		10 (11.3)
국세청		200			32.6	0	32.6		17.8
Panel D. 중간 단계에서 면세 거래가 포함된 상황+C4 사업자도 전가+의제매입 허용									
A4	0	100	100	10	10	0	10	110	10
B4	100	50	160	0	0	-	0	160	0
C4	160	50	212.8	10	21.3	13.2	8.1	234.2	16.2
최종 소비자			212.8 (200)				21.3		10 (10.7)
국세청		200			31.3	13.2	18.1		9.1

주: () 안은 면세거래가 없었을 경우 소비자가 직면했을 공급가액 및 유효세율

자료: 저자 작성

나. 중간 단계 면세 거래 상황

두 번째, 면세 거래가 포함된 상황을 살펴본다.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 및 전체 부가가치의 크기는 앞선 완전 과세거래 상황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만 이 거래의 두 번째 거래 사업자인 B2의 경우 면세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다른 점이다. 사업자 A2의 경우에는 사업자 A1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100원에 대한 납부세액 10원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은 10%이다. 사업자 B2는 부가가치 50원을 받

생시켰으나,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따라서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예에서 B2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0%이다.⁴⁾ 이 면세 사업자의 행태가 이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면 면세 사업자는 본인의 매입금액 110원에 포함된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종종 다음 거래 단계에 전가시킨다. 따라서 110원의 매입금액 중 본인이 납부한 10원의 매입세액을 다음 거래 단계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실증적으로 관찰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배경으로는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연구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 전부가 다음 단계 거래로 전가됨을 가정한다. 만약 이러한 이론적 예측에 따라 전가가 발생한다면 C2와 B2와의 거래에서는 매입가액 100원과 부가가치 50원을 더한 150원의 공급가액이 아닌 추가적으로 10원이 더해져 160원의 공급가액으로 거래된다. C2는 5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1원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만,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매입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C2는 매출세액 21원을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C2 사업자와 B2 사업자가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C2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C2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자신이 창출한 50원의 부가가치 대비 약 42%에 해당하는 21원을 납부하게 되어 유효세율의 크기가 명목 표준세율보다 훨씬 커진다. 이 경제 거래 전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는 200원으로 정상 거래와 동일하지만, 납부세액은 31원으로 정상거래의 20원보다 11원 크며, 이 경제 전체의 유효세율은 15.5%로 명목 표준세율보다 커진다. 반면 최종 소비자 기준으로는 명목적으로는 공급가액 210원의 10%에 해당하는 21원이 부가가치세 부담 10%이다. 다만 면세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 전가가 일어난 경우, 이러한 전가가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전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최종 소비

4) 이러한 정의는 뒤에서 언급할 Gottfried and Wiegard(1991) 및 박명호·정재호(2014)의 정의와 다르다.

자가 면세 거래가 없었다면 지불했을 공급가액은 210원이 아닌 200원이었을 것이다. 200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20원이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1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중간의 면세 거래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유효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아닌 10.5%가 된다. 즉 직접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지만, 10원만큼의 추가적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꼴이 된다. 면세의 정책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 오히려 면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 면세 거래 및 사업자 전가가 발생한 상황

이미 언급했듯이 사업자 C는 면세 사업자인 B 사업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 B는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사업자 C의 경우에는 납부 매입세액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사업자 C가 본인이 지불한 매입금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사업자 C 역시 최종 소비자에게 납부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를 Panel C에서 설명한다.

C3 사업자의 매입가액 160원에 매입세액은 160원×10%인 16원만큼 이라고 간주할 경우, C3 사업자는 매입가액 160원에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50원, 그리고 납부하지도 않았지만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매입세액 16원을 더해 최종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226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최종 소비자는 226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2.6원을 납부하여, Panel A와 Panel B의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역시 이 경우에도 전가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공급가액은 200원이었을 것이고, 이를 고려할 때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는 11.3%로 더 높아질 것이다. 면세 거래와 그에 따른 전가 행위가 거래 단계마다 중복하여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최종 담세자인 소비자의 세 부담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

〈표 Ⅲ-1〉에서 살펴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괴리는 면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 현상(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이론상 10%와 괴리되는 것은 면세 거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외 사항이 산업별·업종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면 경제적 비효율의 왜곡이 산업 전반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왜곡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모든 면세 거래를 정상 거래로 전환하고 단일세율 10%를 균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보완,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포함된 상황

면세 제도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각종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공제제도 등에 따라 실질적 세 부담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할 경우, 즉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앞선 예에서 C3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 B3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라고 하면, 160원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16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실제 납부 매입세액은 없으나 사업자가 납부했다고 오해할 경우) 이때 일정 비율을 인정하여 공제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 주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면세 제도와 더불어 공제제도가 실질적 세 부담을 변화시켜, 명목 표준세율과 괴리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검색일자: 2022. 5. 24.

〈표 Ⅲ-1〉의 Panel D에서 간단한 예를 검토하였다. 의제매입공제율을 9/109로 간주하면 사업자 C4는 이제 13.2원만큼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C4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매입세액만을 전가한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는 212.8원의 공급가액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21.3원으로 Panel C와 비교하면 최종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크기도 감소한다. 이는 정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하는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경로를 확인해 준다. 이때 이론적으로 C4 사업자 및 B4 사업자의 면세에 따른 가격 전가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소비자가 직면했어야 하는 공급가액은 앞선 예들과 마찬가지로 200원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한 부가가치세 21.3원과 이론적으로 소비자가 직면했어야 하는 금액 200원을 비교하면,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0.7%로 산출된다. Panel D의 분석 결과를 Panel C와 비교하면, 정부가 면세 거래의 중복 과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을 도입한 결과,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실질적 부담 역시 감소하게 된다.

제도의 취지는 앞선 예에서처럼 부가가치세가 누적 혹은 환수됨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 소비자의 실질적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다. 만약 C2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인정받게 되면, 다음 거래 단계인 최종 소비자에게 매입세액을 전가시킬 유인이 사라진다. 정부 정책의 암묵적인 가정 역시 비록 C2 사업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Panel C의 상황이며, 이를 교정하려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도입의 시나리오가 Panel D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실 세수 부담은 면세 거래, 각종 공제제도 등의 정부 정책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종 소비자의 실 세수 부담은 과세 당국이 거둬들이는 세수입과도 관련이 있다. 완전 과세거래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세수는 경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200원에 대한 세

수 20원이 견힌 반면, 면세 거래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31원이 견혀 오히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세수를 더 견게 된다.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Panel C의 경우에 과세 당국이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32.6원으로 더욱 높아진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면세 거래로 인한 중복 과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세수입은 완전 과세거래보다도 감소하게 되는데, 의제매입세액이 사실상 지원금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세입을 희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괴리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예외적 사항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이상 관찰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세의 내재적 한계점인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공제제도 등을 통한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표준 명목세율과 괴리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 괴리로 인해 경제에 예상치 않은 비효율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정의 및 추정방법

이번 절에서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정의는 다른 세목에서 정의하는 실효세율 혹은 유효세율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추정한다는 궁극적 목적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이나 다른 세목의 유효세율 추정이나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의 정의는 다른 세목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각 거래 단계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실제 세 부담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때 최종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거래 단계에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모든 거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하여 계산한다. 다른 세목에서는 실제 부담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것과 외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앞의 예인 <표 Ⅲ-1>에서 살펴보았지만,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유효세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앞선 예에서 사용한 정의를 따르면, 면세 거래가 포함된 상황이든 완전 과세거래 상황이든,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은 생산자들 사이에서 가격 전가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었을 최종 공급가액과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 과세거래에서는 이 비율이 10%가 될 것이며, 예외적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10%와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정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공급되었어야 할 반사실적인(counterfactual) 공급가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가상의 공급가액이 정상거래에서는 최종 공급가액과 동일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가격 전가, 중복 과세, 공제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급되었어야 할 공급가액을 추정하기 위해 면세 거래는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비롯한 공제제도 등을 고려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기존과 다르게 정의하는 데 중요한 배경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최종 담세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세액을 통해 유효세율을 비교함으로써 그 개념을 세목 간 균형 있게 해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국세청의 개별 납세자로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접근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기존에 정의하였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방법은 30여 년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정의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혹은 보완하고자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다. 넷째,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추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실제적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세분화된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납세자료와 정확하게 연계되는 미시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더 세분화된 자료가 준비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점은 추후 정책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가. 기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방법

소득세 유효세율 혹은 실효세율이라 함은 보통 총 급여액(연간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 유효세율의 개념 역시 비슷하다. 구체적인 비용 공제 및 과표 기준과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하나, 법인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도출하기 위해 법인의 소득 대비 실제 납부세액의 비중을 계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반면에 기존 연구에서 주로 차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개념은 다른 세목의 유효세율과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구조가 다른 세목과 다르고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는 부가가치세만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계점 및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1)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방법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즉 공급대가와 해당 거래 단계까지의 누적 부가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rac{\text{공급대가}_t - \sum \text{부가가치}}{\text{매출액}_t} = \frac{1.1 * \text{매출액}_t - \sum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begin{aligned}
&= \frac{0.1 * \text{매출액}_t + \text{매입액}_t - \sum^{t-1}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
&= 0.1 + \frac{\text{매입액}_t}{\text{매출액}_t} - \frac{\sum^{t-1}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end{aligned}$$

이상의 산식에 10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한다. 이 산식에서 매출액은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정의에 따르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유효 부가가치세율의 크기는 10% 보다 작을 수 없다. 왜냐하면 $\frac{\text{매입액}_t}{\text{매출액}_t} \geq \frac{\sum^{t-1}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t 거래 단계의 매입금액이 전 단계의 부가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직관적인 예로, 재화를 100원에 매입하여 부가가치 200원을 붙여 3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다음 거래 상대방(쉬운 예를 위해 최종 소비자라고 간주한다)은 300원에 재화를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거래 단계의 최종 소비자가 구입하는 금액은 전 단계의 부가가치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할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지불하는 매입액이 전 단계의 부가가치보다 작다면 전 단계의 사업자는 손해를 보고 파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정의에 따른 유효세율은 10%보다 작을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인 소비자의 세 부담은 10%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 즉 거래 과정에 면세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앞선 산식에서 다음과 같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frac{\text{공급대가}_t - \sum^t \text{부가가치}}{\text{매출액}_t} \neq \frac{1.1 * \text{매출액}_t - \sum^t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즉 면세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는 매출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식을 다시 써 보면 다음과 같다.

$$\frac{\text{공급대가}_t - \sum \text{부가가치}}{\text{매출액}_t} = \frac{\text{매출액}_t - \sum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 \frac{\text{매입액}_t - \sum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 \frac{\text{매입액}_t}{\text{매출액}_t} - \frac{\sum (\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_t}$$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이 중간 거래에 포함이 된 경우에는 앞선 정상 거래와 달리, 유효 부가가치세율이 10%보다 작을 수 있다.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면세 거래라 하더라도 t 거래 단계의 매입금액이 전 단계의 부가가치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커지기 때문에, 유효 부가가치세율은 0%를 넘게 된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명목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이다.⁶⁾

2) 한계점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개념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Gottfried and Wiegard(1991)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 부문별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산출한다. 산업연관표에 제시된 투입 계수표를 활용하여 최종 거래 단계까지 포함되는 중간 과세 거래 및 면세 거래의 비중을 고려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가정하여 300~400여 개 되는 각 산업 부문별 유효세율을 추정한 후, 그 세율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조사한 자료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조사자료인 「가계동향조사」에서 집계된 각 응답자별 소비지출 금액과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된 각 부문별 유효세율의 크기를 곱하여 소비자별 실질적 세 부담을 산출한다. 거래의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종 거래 중에 면세 거래가

6) 박명호·정재호(2014), pp. 42~47에서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을 행렬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소비자 자료에서 조사한 소비항목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관련 항목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박명호·정재호(2014)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비자가 「가계동향조사」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세부적으로 답변한 항목은 산업연관표상에서 도축육, 가금육, 기타축산 등과 연계시키게 된다. 따라서 어느 부문을 연결시켜 유효 세 부담을 산출하는지는 연구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은 몇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정은 중간 단계에 면세가 포함될 경우 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전가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 전가의 크기를 매입금액의 10/110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이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해외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Benzarti and Carloni, 2019).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가 부재해 추후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만약 가격 전가가 이론과 다르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기존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한계점은 가격 전가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중간 단계의 면세 사업자만이 가격 전가를 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표 III-1>에서 면세 사업자 B만이 본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가격 전가의 대상으로 가정한다. 동일한 논리로,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 사업자 역시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정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역시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일정 부분 부담했다고 가정한다는 면에서 이들의 가격 전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면세 사업자만이 가격 전가를 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과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일종의 논리적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C 역시 자신이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매입세액을 최종 소비자 가격

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역시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한계점은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과 가격 전가 등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각종 공제 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이 역시 사업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격 전가 등의 행태를 면세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을 유효세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새로운 추정방법

앞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추정의 한계점을 밝혔으나, 현실적인 자료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항에서는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의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선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론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미시자료를 통한 추정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자 한다.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첫 번째 한계점은 본 연구를 통해 개선하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역시 모든 거래 과정을 파악할 수 없고 산업 간 연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현실적으로 산업연관표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를 사용하여도 비슷한 한계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산업 세분류보다도 더 세분화된 업종 기준(약 979개)으로 본다는 장점과 이를 통해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반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한계점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용

새로운 방법론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의 실제 납부세액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납부세액은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부가

가치 등 모든 거래 과정을 거쳐 산출된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른 각종 공제제도의 영향도 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계산에 의미가 없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소비자들이 납부할 세금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가격 전가, 공제 등의 영향이 없었을 경우의 반사실적인 공급가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반사실적인 공급가액 대비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2)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 단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선별한다. 이는 신고서식상 정확히 식별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한다. 최종 소비자와 주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현금 및 카드 계산서 내역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거의 없고, 현금 및 카드 계산서 내역이 더 많은 사업자를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로 식별하는 가정을 사용한다.

2단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는 매입, 매출, 의제매입세액, 각종 공제세액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에 대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산출이 필요하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업종별로 최대한 자세히 묶어 부가가치율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율은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를 매입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도출된 부가가치는 실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와 다를 수 있다. 실제 창출한 부가가치는 가격 전가 등이 배제되어야 하지만 신고자료를 통한 부가가치 계산에는 사

업자들의 가격 전가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사업자별로 가격 전가의 크기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추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업종, 비슷한 매출 등을 기준으로 사업체를 분류한다. 그리고 이들 사업체들 가운데 면세 거래 수입 내역이 있는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의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을 사용한 부가가치를 비교한다. 면세 거래 수입 내역이 있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와 면세 거래 수입 내역이 없는 사업체의 부가가치 차이는 면세 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전가라고 가정한다.

3단계는 각 거래단계에서 면세 업종의 사용 비중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통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결국 여기서는 산업연관표의 각 부문 간 연계 지수를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체가 중간 거래 단계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들을 연계한다.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실제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해 본다. 먼저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과세 거래인 경우를 살펴본다. 이론적인 공급가액은 최종 소비자 거래 기업의 최종 공급가액에서 전 단계 매입금액의 10/110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제외한다. 이때 가격 전가율은 10/110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거래자료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를 별도로 추정한다. 먼저 의제매입 등이 전혀 없는 경우인 <표 Ⅲ-1>의 Panel C를 살펴본다. 면세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B3와 C3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다음 단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금액은 226원이었다. 만약 가격 전가가 없었다면 최종 소비자가 지불했어야 할 200원보다 26원 더 높은 수준이었다. 26원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B3 사업자가 자신의 매입금액 11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매입세액 10원을 전가한 부분과 C3 사업자 역시 자신의 매입금액 16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매입세액 16원을 전가한 부분이다. 이 둘을 합해 26원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지불했어야 할 이론적인 공급가액의 크기는 최종 지불 공급

가액인 226원에서 전 단계에서의 매입금액들의 10/110(가격 전가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인 26원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인,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이 면세 사업자와 거래한 과세 사업자에 대한 일부 지원이 존재하는 Panel D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자. Panel D에서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공급가액은 212.8원이었으며, 이론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직면했어야 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앞선 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지불했어야 하는 공급가액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불한 212.8원에서 12.8원을 차감해야 한다. 이 12.8원의 크기는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전가된 10원과 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전가된 16원에서 과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은 의제매입 금액 13.2원을 공제한 2.8원을 합함으로써 산출된다. 이때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 전가율은 10/110으로 가정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반영되면서 가격 전가의 크기가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나타난 공급가액에서 전 단계 매입금액의 10/110(가격 전가율)을 곱한 금액의 합과 의제매입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이론적으로 이들 사업자가 벌었 을 반사실적 공급가액 혹은 매출과표가 된다. 기존 유효세율 산출방법과의 큰 차이점은 실제 매입금액들을 반영하고, 가격 전가율을 10/110으로 가정 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신고자료를 통해 산출하여 추정된 가격 전가율 값을 사용한 점이다.

$$\text{반사실적공급가액} = \text{최종 공급가액}_t - \sum_i^t a_i (\text{매입금액}_i) * \text{가격전가율} + \sum_i^t \text{의제매입세액}$$

여기서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로 분류된 업종과 전 단계 업종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a_i)를 활용한다. 즉 매입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전부 반사실적 공급가액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 비율만큼만 매입금액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반사실적

공급가액을 추정한 후, 최종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유효세율을 산출한다.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반면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가 면세 거래인 경우는 앞의 경우와 좀 다르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앞선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자료의 납부세액과 추정된 반사실적 공급가액을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하였는데,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 단계에서 면세 거래인 경우 최종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사실적 공급가액 추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 항에서 정의하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0%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반사실적 공급가액을 추정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는 0이 된다. 결론적으로 면세 거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 대한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의무가 없지만,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 현황 자료에는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명세서에 계산서 발행금액 및 계산서 발행금액 이외 매출(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토대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선별하여 최종 거래 사업자로 정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의 경우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면세 사업자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다. 일부 전문직의 경우 의무이지만 그 외의 면세 사업자들은 신고 자체가 적어, 이 점은 자료 활용에 있어 한계라 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의 면세 거래의 경우, 중간 단계의 면세 및 가격 전가가 없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했을 반사실적 공급가액과 실제 면세 사업자가 최종 단계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지불받은 매출금액의 차이가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 사업자가 전 단계 거래에서 발생한 왜곡으로 인한 세 부담은 반사실적 공급가액 대비 실제 지불한 금액

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3) 한계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거래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 산업연관표만이 산업 간 연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첫 번째 한계점은 여기서도 개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케이크 구입비, 기타 빵 구입비, 떡 구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에서 산업연관표를 활용할 경우, 이들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세세분류 단위의 산업연관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적정한 산업분류를 배정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케이크, 식빵, 떡류 등을 판매하는 업종을 각각 특정하고,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관련 지출 항목의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떡의 경우에는 식료품 소매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에 대한 평균 유효세율 추정 값을 사용한다. 실제로 신고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추정된 유효세율 값을 평균하여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의 값을 배정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판매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효세율의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부여할 경우 이에 따른 오차는 커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상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 그래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거의 없고, 현금 및 카드 계산서 내역이 더 많은 사업자를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업종별로 최대한 자세히 묶어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신고자료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을 계산할 때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면세 사업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한계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자료이기에 여기에 고의적 혹은 실수로 신고 누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자료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신고 오류에 의해 혹은 탈세 등으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과소 추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4. 산업 및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이

이번 절에서는 산업연관표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산업별, 그리고 사업자별 유효세율을 산출한다. 먼저 기존의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개념을 활용하여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살펴본다. 기존의 박명호·정재호(2014)에서 도출한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연장하여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천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일반사업자(법인 및 개인)와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살펴본다.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보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단순히 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물론, 면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왜곡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 형태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공제 등 여러 공제제도가 적용된 후 실제 사업자들이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긴 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납부세액과 가격 전가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부가가치의 크기(매출과 매입의 차이를 매입으로 나누는 부분)를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방법과 달리 새로운 유효세율 산출 방법과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하는 사업자들은 과세 사업자만이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

에 실제 납부세액을 알 수 없어서 면세 사업자의 유효세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가.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산업연관표)

본 절에서는 기존의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개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산업연관표 기본분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⁷⁾ 이를 다시 대분류 산업군으로 묶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설명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하나는 재화 또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재화 또는 용역별 중간투입물의 사용 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재화 또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앞서 언급하였던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별 중간투입물 사용 정도는 산업연관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1) 2010년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이용 가능한 최신의 2019년 산업연관표까지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10년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기준은 2000년에는 28개 산업군이었지만, 2010년에는 30개 산업군으로,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33개 산업군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연도별로 산업 구분이 상이해지면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산업은 2015년 이후부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로 재분류되었다. 특히 정밀기기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로 분류되었고, 전기 및 전자기기의 전자기기는 전기장비로 재분류되었다. 따라서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졌다.

7) 기본분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결과는 부록 참고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분야인 농림수산물, 광산품과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천을 살펴보자.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10년에 6.06%에서 2019년에 6.35%로 약간 상승하였다. 광산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2010년에 10.08%에서 2019년에는 10.35%로 약간 상승하였다.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역시 2010년에는 9.36%였지만 2019년에는 9.80%로 약간 상승하였다.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10년에 2.80%에서 2019년에는 3.21%로 약간 상승하였다. 성인 대상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10년에 9.87%에서 2019년에는 10.20%로 상승하였다. 과세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방송 서비스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10년에 2.50%에서 2019년에는 2.40%로 약간 하락하였지만, 추세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10년에 4.67%에서 2019년에는 4.69%로 거의 변화 없다.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전체 의료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서 보건 및 사회복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2010년에 7.48%에서 2019년에는 7.13%로 약간 하락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산업이고, 이들 산업의 부가치세 면세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간투입물 비중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2〉 2010~2019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단위: %)

산업부문명	2010	2011	2012	산업부문명	2016	2017	2018	2019
농림수산물	6.06	5.98	5.94	농림수산물	5.78	5.67	6.04	6.35
광산품	10.08	9.93	9.95	광산품	10.12	10.31	10.28	10.35
음식료품	9.36	9.53	9.69	음식료품	9.83	9.79	9.73	9.80
섬유 및 가죽제품	10.61	10.66	10.66	섬유 및 가죽제품	10.53	10.52	10.53	10.52
목재 및 종이, 인쇄	10.63	10.69	10.67	목재 및 종이, 인쇄	10.41	10.45	10.44	10.46

〈표 III-2〉의 계속

(단위: %)

산업부문명	2010	2011	2012	산업부문명	2016	2017	2018	2019
석탄 및 석유제품	10.52	10.66	10.68	석탄 및 석유제품	10.37	10.41	10.45	10.43
화학제품	10.60	10.64	10.66	화학제품	10.41	10.44	10.46	10.44
비금속광물제품	10.72	10.76	10.79	비금속광물제품	10.52	10.58	10.60	10.58
1차 금속제품	12.18	12.21	12.15	1차 금속제품	10.69	10.78	10.78	10.78
금속제품	10.91	10.96	10.94	금속가공제품	10.38	10.42	10.42	10.41
기계 및 장비	10.73	10.77	10.77	기계 및 장비	10.39	10.42	10.44	10.41
전기 및 전자기기	10.47	10.49	10.50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0.28	10.28	10.28	10.26
정밀기기	10.47	10.51	10.51	전기장비	10.37	10.40	10.41	10.38
운송장비	10.66	10.72	10.73	운송장비	10.39	10.42	10.43	10.41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0.50	10.56	10.57	기타 제조업 제품	10.41	10.43	10.44	10.43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0.33	10.35	10.36	10.31
전력, 가스 및 증기	10.49	10.58	10.57	전력, 가스 및 증기	10.33	10.33	10.38	10.36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7.48	7.56	7.32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6.85	7.11	7.05	7.13
건설	9.81	10.04	10.10	건설	9.77	9.89	9.90	9.86
도소매 서비스	10.55	10.61	10.64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0.38	10.39	10.40	10.4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54	11.68	11.7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53	11.54	11.58	11.54
운송 서비스	9.09	9.42	9.48	운송 서비스	9.08	9.15	9.27	9.24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9.87	9.92	9.94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17	10.21	10.21	10.20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92	4.27	4.4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57	3.62	3.50	3.64
부동산 및 임대	6.23	6.24	6.20	부동산서비스	6.34	6.46	6.36	6.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8.30	8.15	8.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8.72	8.65	8.66	8.60
사업지원서비스	10.47	10.51	10.54	사업지원서비스	10.20	10.22	10.21	10.21
공공행정 및 국방	2.50	2.52	2.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48	2.53	2.44	2.40
교육서비스	2.80	2.86	3.03	교육서비스	3.21	3.19	3.10	3.21
보건 및 사회복지	4.67	4.75	4.7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4.71	4.73	4.72	4.69
문화 및 기타서비스	9.36	9.41	9.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9.79	9.83	9.85	9.76
				기타 서비스	9.08	9.09	9.11	9.10
				기타	12.46	12.58	12.08	12.07

자료: 박명호 · 정재호(2014), pp. 56~57, 〈표 III-5〉 자료와 저자 작성 자료

2) 1990~202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1990~2020년까지의 30여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자. 30년이란 긴 기간이기에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도 많이 변화하였다. 그동안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기준이 1990년에는 26개 산업군이었지만, 2000년에는 28개 산업군으로, 2010년에는 30개 산업군,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33개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분류 산업군이 더 세분화되었다.

같은 대분류 산업군이라고 해도 30년의 기간 동안 그 구성이 변화하고 규모가 달라져서 정확하게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군 내의 세부산업은 변화하였고 주 산업도 계속해서 변화하였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면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인 10%보다 낮은 산업들도 2019년에는 명목세율인 10%를 넘어서는 산업들도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일반 품목들로 구성된 산업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가 혼재할 때, 과세 재화에 대한 소비 비중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은 해당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면세 재화보다 과세 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농림수산물, 광산물, 그리고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거래 단계에서 과세로 거래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1990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5.13%였는데, 2000년에는 5.17%, 2010년에는 6.06%, 그리고 2019년에는 6.35%까지 증가하였다.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1990년에는 7.43%였는데, 2000년에는 7.90%, 2010년에는 9.36%, 그리고 2019년에는 9.80%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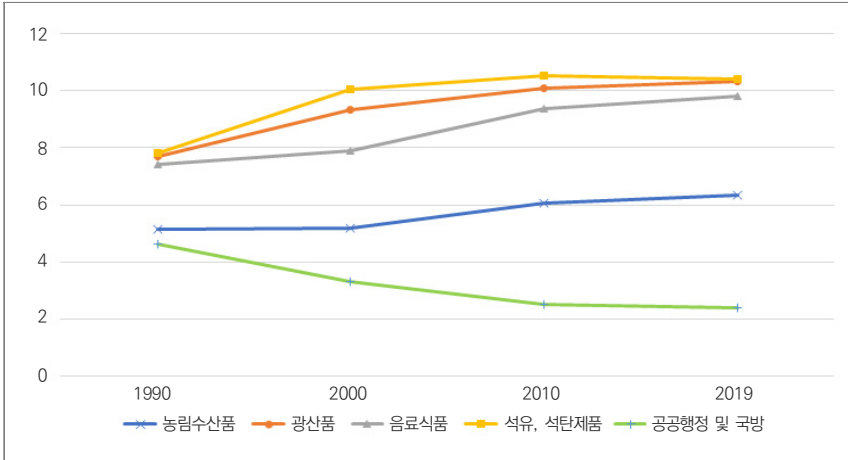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물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의 투입 비중이 더 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한다.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음식료품 산업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가 혼재하고 있는데, 면세 재화보다 과세 재화의 소비 비중이 더 커지고, 또한 음식료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의 투입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추측한다.

광산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1990년에는 7.71%였는데, 2000년에는 9.32%, 2010년에는 10.08%, 그리고 2019년에는 10.35%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석유 및 석탄제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1990년에는 7.871%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 및 석탄제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2000년에는 10.05%, 2010년에는 10.52%, 그리고 2019년에는 10.43%까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광산품과 석유 및 석탄제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명목세율 10%를 넘어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감소하고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990년에는 4.62%였는데, 2000년에는 3.31%, 2010년에는 2.50%, 그리고 2019년에는 2.40%까지 감소하였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에도 면세 범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보다 면세 재화의 비중이 더 커진 결과로 보인다.

[그림 III-1] 주요 대분류 품목군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박명호 · 정재호(2014), pp. 56~57, <표 III-5> 자료와 저자 작성 자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업들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일반 품목들로 구성된 산업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일반 제품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대부분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인 10%를 넘어서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중간 투입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표 III-3〉 1990~2019년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단위: %)

대분류	1990	대분류	2000	대분류	2010	대분류	2019
농림수산물	5.13	농림수산물	5.17	농림수산물	6.06	농림수산물	6.35
광산품	7.71	광산품	9.32	광산품	10.08	광산품	10.35
음식료품	7.43	음식료품	7.90	음식료품	9.36	음식료품	9.80
섬유, 가죽	11.04	섬유 및 가죽제품	10.65	섬유 및 가죽제품	10.61	섬유 및 가죽제품	10.52
종이, 나무제품	10.34	목재 및 종이제품	10.38	목재 및 종이, 인쇄	10.63	목재 및 종이, 인쇄	10.46
		인쇄 및 복제	8.35				
석유, 석탄제품	7.81	석유 및 석탄제품	10.05	석탄 및 석유제품	10.52	석탄 및 석유제품	10.43
화학제품	9.48	화학제품	10.36	화학제품	10.60	화학제품	10.44
요업토석제품	10.30	비금속광물제품	10.37	비금속광물제품	10.72	비금속광물제품	10.58
1차금속	10.29	1차 금속제품	10.35	1차 금속제품	12.18	1차 금속제품	10.78
금속제품	10.33	금속제품	10.31	금속제품	10.91	금속기공제품	10.41
일반기계	10.31	일반기계	10.35	기계 및 장비	10.73	기계 및 장비	10.41
전기 및 전자기기	10.32	전기 및 전자기기	10.35	전기 및 전자기기	10.47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0.26
정밀기기	10.38	정밀기기	10.54	정밀기기	10.47	전기장비	10.38
수송기계	10.30	수송장비	10.35	운송장비	10.66	운송장비	10.41
기타 제조업 제품	5.52	기타 제조업 제품	10.40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0.50	기타 제조업 제품	10.43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0.31

〈표 III-3〉의 계속

(단위: %)

대분류	1990	대분류	2000	대분류	2010	대분류	2019
전력, 가스 및 수도	9.65	전력, 가스 및 수도	9.81	전력, 가스 및 증기	10.49	전력, 가스 및 증기	10.36
건설	9.27	건설	9.01	건설	9.81	건설	9.86
운수 및 보관	7.55	운수 및 보관	8.53	운송 서비스	11.54	운송 서비스	9.24
금융 및 보험	2.56	금융 및 보험	2.0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92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64
공공행정 및 국방	4.62	공공행정 및 국방	3.31	공공행정 및 국방	2.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40
사회 및 개인 서비스	9.43	사회 및 기타서비스	9.14	문화 및 기타서비스	9.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9.76
						기타	12.07

자료: 박명호·정재호(2014), pp. 54~55, 〈표 III-4〉 자료와 저자 작성 자료

나. 사업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국세통계연보)

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계산하였다. <표 Ⅲ-4>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기준 법인사업자들의 매출과표, 매입과표 및 부가가치, 그리고 실 세수를 정리하였으며, 단순히 과세표준 및 실 세수의 평균값들로 유효세율을 계산하였다. 부가가치는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의 차이로 정의한다. 단순한 계산을 위해 매출과표는 『국세통계연보』상의 과세분매출, 영세율매출, 면세분매출을 모두 더하였으며, 매입과표는 『국세통계연보』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2014년 법인사업자의 매출과표 총액은 약 4,073조원이었으며, 매입과표는 약 2,750조원으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 규모는 약 1,323조원으로 추정된다. 2014년 이후 2019년까지는 법인사업자들의 매출과표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귀속 연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에 따라 매출과표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매출과표 총액은 4,826조원, 매입과표는 3,014조원으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 규모는 약 1,800조원이 넘었다.

실 세수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이 값을 나타내며, 2014년에는 48.9조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67.1조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세수를 앞서 계산한 부가가치 규모로 나누어 유효세율을 단순 계산해 보면 법인사업자들의 평균 유효세율의 크기는 약 3.6~3.7%로 나타난다. 유효세율의 크기는 크게 변화가 없으며, 절대적인 크기 자체는 명목 표준세율인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법인사업자 매출, 매입과표, 부가가치 및 실 세수

(단위: 백만원, %)

연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	실 세수	유효세율
2014	4,073,571,487	2,750,451,884	1,323,119,603	48,849,800	3.69
2015	4,098,984,195	2,633,725,086	1,465,259,109	52,694,200	3.60
2016	4,211,303,971	2,643,157,380	1,568,146,591	55,704,200	3.55

〈표 Ⅲ-4〉의 계속

(단위: 백만원, %)

연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	실 세수	유효세율
2017	4,586,174,724	2,920,164,641	1,666,010,083	58,615,700	3.52
2018	4,777,842,018	3,082,289,263	1,695,552,755	60,862,100	3.59
2019	4,851,067,467	3,108,398,276	1,742,669,191	62,120,200	3.56
2020	4,825,823,642	3,014,192,856	1,811,630,786	67,144,500	3.7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의 〈9-1-2〉, 〈9-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음의 〈표 Ⅲ-5〉는 법인사업자의 업종별 유효세율의 크기를 비교·정리하였다. 유효세율 계산을 위해서 매출과표와 매입과표는 〈표 Ⅲ-4〉와 동일하게 정의하였으며, 세수는 차감납부세액에서 차감환급세액을 뺀 값을 사용하였다.

〈표 Ⅲ-5〉 법인사업자 업종별 유효세율 크기

(단위: %)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어업	0.49	0.42	0.36	0.56	0.55	0.76	1.01
광업	15.06	-26.73	-1.04	0.66	-8.40	-8.90	-0.29
제조업	-5.45	-3.59	-2.77	-3.34	-3.79	-3.69	-2.76
전기가스제조업	3.59	8.21	8.37	8.08	7.27	7.78	8.61
도매업	3.49	3.01	3.08	2.97	2.90	2.76	2.79
소매업	3.98	3.83	2.89	3.38	3.24	3.38	3.70
부동산매매업	0.37	1.08	0.82	0.00	0.13	-0.61	0.25
건설업	3.12	3.10	2.81	3.05	3.31	3.67	3.74
음식업	10.26	7.34	9.70	9.76	9.76	9.94	9.66
숙박업	0.89	8.86	0.26	-0.52	-0.06	-0.44	-0.84
운수창고통신업	1.96	2.15	2.32	2.71	2.32	1.77	2.90
부동산임대업	4.67	5.87	5.12	5.96	3.50	2.87	3.37
대리중개도급업	3.38	3.71	3.74	3.74	3.86	3.93	3.70
서비스업	3.91	3.84	3.71	3.65	3.69	3.49	3.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의 〈9-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6〉 법인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

(단위: %)

신고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7기	27기	17기	27기	17기	27기	17기	27기	17기	27기	17기	27기	17기	27기
50백만원 미만	-10.0	-3.80	-8.54	-6.03	-4.69	-4.58	-4.31	-4.68	-5.06	-5.33	-6.39	-8.92	-7.25	-5.67
50백만원 이상	2.83	2.33	2.13	2.29	2.07	2.26	2.30	2.36	2.26	2.25	2.15	1.82	0.93	3.16
5억원 이상	5.09	4.40	4.54	4.67	4.67	4.77	4.64	4.79	4.56	4.99	5.12	5.39	5.45	5.34
15억원 이상	4.61	4.75	4.78	5.40	5.09	5.04	4.86	5.04	5.21	4.69	5.38	5.34	5.26	-452.5
25억원 이상	2.03	4.61	4.26	4.62	4.20	4.76	4.44	4.86	4.45	4.73	4.43	4.99	4.62	4.90
50억원 이상	3.99	4.17	3.56	3.54	3.47	3.47	3.41	4.06	3.64	4.17	2.37	3.83	3.23	4.12
75억원 이상	3.33	3.90	3.72	3.11	3.42	3.85	3.57	3.65	3.35	3.88	3.03	1.98	3.56	3.58
100억원 이상	2.72	2.39	2.82	3.13	2.44	3.17	2.99	2.98	2.70	2.92	3.01	3.47	2.85	3.55
250억원 이상	0.54	0.92	0.35	0.67	0.72	0.95	0.32	1.16	1.08	1.25	0.79	1.85	1.38	2.00
500억원 이상	-2.19	-2.41	-1.18	-1.27	-0.55	-0.92	-1.44	-1.06	-1.60	-1.59	-1.42	-1.48	-0.75	-0.5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의 〈9-2-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Ⅲ-6〉은 법인사업자들 부가가치세 신고 1기와 2기로 나누어 법인의 규모별로 납부세액과 부가가치 총액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집계자료를 사용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는 규모에 상관없이 10%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석은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 대비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과표에 영세율 매출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매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유효세율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이 역시 각종 공제제도 및 소규모 법인 및 일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매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부가가치 대비 납부세액의 비율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사업자들의 유효세율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영세율 매출분이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법인사업자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이번 절에서는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계산한다.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 그리고 실 세수의 자료 및 추정방법은 앞선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Ⅲ-7〉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세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유효세율을 계산한 것이다. 유효세율은 6% 내외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유효세율의 크기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여, 법인사업자들과 대조를 이룬다. 앞서 살펴본 법인사업자의 유효세율의 크기와 일반사업자의 유효세율의 크기가 약 2배 차이나는 이유는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영세율 매출분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7〉 일반사업자 매출, 매입과세표준, 부가가치 및 실 세수

(단위: 백만원, %)

연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	실 세수	유효세율
2014	673,533,180	438,028,385	235,504,795	16,399,800	6.96
2015	706,614,854	439,115,860	267,498,994	16,854,500	6.30
2016	728,506,570	462,118,284	266,388,286	17,643,500	6.62
2017	768,049,800	498,093,311	269,956,489	18,479,700	6.85
2018	791,887,175	494,833,178	297,053,997	19,157,400	6.45
2019	806,794,649	491,724,002	315,070,647	20,274,100	6.43
2020	801,142,068	483,136,016	318,006,052	18,741,800	5.8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의 <9-1-2>, <9-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8〉에서는 일반사업자의 규모별 유효세율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 대비 실제 납부세액의 크기는 음(-)의 값을 가진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따른 각종 공제 혜택이 영세한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규모가 클수록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일반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유효세율의 크기는 더 작은 경향이 관찰된다. 규모별로 연도별 유효세율의 변화는 크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명목세율의 변화가 없고, 면세 범위 등의 조정도 큰 폭으로 변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역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연도별 일정 수준의 유효세율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단순히 납부세액과 매출과표 및 매입과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산정하여 이 둘을 이용한 유효세율 추정치는 1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서론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세, 가격 전가 등의 영향으로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명목세율을 넘어서는 것을 예측한 것과는 다르다. 계산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납부세액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일 수 있다. 한 가지 또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앞선 예와 달리 실제의 경우,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가상의 예에서 살펴본 세 부담보다는 낮게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지게 될 세 부담 역시 앞선 예와 달리, 면세 및 가격 전가 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Ⅲ-8〉 일반사업자 업종별 유효세율 크기

(단위: %)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어업	4.53	4.45	4.13	4.10	4.09	4.27	4.23
광업	9.83	9.17	9.60	9.59	9.50	9.68	9.39
제조업	8.29	8.39	8.38	8.98	8.49	8.46	8.51
전기가스제조업	9.99	10.08	10.2	10.0	10.0	10.0	10.1
도매업	5.70	4.19	5.12	5.43	5.43	5.30	5.37
소매업	2.33	1.97	2.14	2.28	2.11	1.99	2.21
부동산매매업	2.09	0.53	0.38	-0.59	-0.86	-1.02	0.51
건설업	8.23	7.11	6.86	6.83	6.88	6.66	7.15
음식업	9.93	9.52	13.6	13.1	9.97	11.4	8.19
숙박업	4.55	3.57	5.09	5.64	6.87	6.96	6.48
운수창고통신업	9.89	9.88	9.90	11.3	13.6	9.92	9.94
부동산임대업	8.59	8.09	7.43	7.33	7.47	8.02	7.28
대리중개도급업	8.17	8.58	8.30	8.42	8.60	8.65	8.70
서비스업	6.75	5.91	6.08	7.12	5.82	5.67	5.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의 〈9-3-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Ⅲ-10〉과 〈표 Ⅲ-11〉은 2016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실제 신고자료의 일부 표본에 대해서 앞선 『국세통계연보』의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과표를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추정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의 대표 표본이기 때문에 〈표 Ⅲ-9〉와 해석 차원에서 큰 차이는 없다. 〈표 Ⅲ-10〉은 〈표 Ⅲ-9〉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일부 극단 값(outlier)의 영향으로 보이며, 극단 값을 제외한 결과인 〈표 Ⅲ-11〉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관찰된다.

〈표 III-9〉 일반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

(단위: %)

신고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30백만원 미만	-0.94	-3.74	-5.26	-6.88	-8.41	36.6*	11.8*	-28.1	-4.78	-7.21	-2.85	-11.1	-1.40	-8.41
30백만원 이상	6.79	15.35	6.87	6.87	6.92	6.83	6.83	8.98	6.97	10.96	6.96	6.99	7.51	7.10
48백만원 이상	7.26	7.17	7.25	7.19	7.24	7.21	7.22	7.24	7.20	7.09	7.32	7.24	7.36	7.05
60백만원 이상	7.31	7.31	7.34	7.32	7.38	7.28	7.24	7.28	7.12	7.27	7.32	5.37	7.25	7.29
72백만원 이상	7.40	7.31	7.29	7.33	7.19	7.35	7.30	7.37	7.14	7.23	7.22	7.31	6.98	7.13
1억원 이상	7.65	7.64	5.72	7.55	7.46	7.45	7.87	7.44	7.34	7.39	7.35	7.40	6.98	7.16
2억원 이상	7.96	8.19	7.85	7.93	7.75	7.96	7.86	8.01	7.83	7.54	7.62	7.55	7.36	7.39
5억원 이상	7.56	7.66	6.96	7.55	7.75	7.85	7.95	7.96	7.98	7.75	7.85	7.83	7.28	7.58
10억원 이상	6.55	6.85	6.59	6.80	6.72	6.72	7.14	7.19	6.93	7.03	6.89	6.98	6.81	6.22
20억원 이상	5.66	6.14	5.75	5.70	4.99	5.02	4.82	5.40	4.89	5.16	4.78	4.85	4.95	4.71

주: *는 매입과표가 매출과표보다 크고 환급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크게 나타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의 (9-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I-10〉 일반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개별 납세자료)

(단위: %)

신고기간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1기	2기	1기+2기	1기	2기	1기+2기	1기	2기	1기	2기	1기+2기	1기+2기
30백만원 미만	5.43	-3.87	2.29	-38.6	7.41	14.4	5.20	5.89	5.20	5.89	-14.8	-14.8
30백만원 이상	2.28	46.89	10.1	6.62	10.7	11.3	7.21	9.60	7.21	9.60	9.19	9.19
48백만원 이상	9.07	4.79	9.25	10.8	9.25	9.07	10.0	9.27	10.0	9.27	3.98	3.98
60백만원 이상	18.6	6.04	8.27	10.6	9.27	17.2	8.92	-19.6	8.92	-19.6	11.6	11.6
72백만원 이상	8.34	10.1	9.17	11.0	8.76	13.1	9.19	15.5	9.19	15.5	9.46	9.46
1억원 이상	5.10	-32.1	6.63	9.98	10.2	8.71	7.69	10.7	7.69	10.7	-27.1	-27.1
2억원 이상	6.50	15.9	8.63	9.43	22.6	8.58	8.06	145.8	8.06	145.8	9.01	9.01
5억원 이상	9.43	10.7	8.93	9.19	-44.5	9.14	9.41	24.2	9.41	24.2	10.1	10.1
10억원 이상	8.29	7.64	10.1	9.77	9.21	9.76	7.99	-	7.99	-	4.95	4.95
20억원 이상	12.3	8.46	12.3	14.8	9.99	10.8	2.88	9.92	2.88	9.92	-141.9	-141.9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1〉 일반사업자 규모별 유효세율 크기(개별 납세자료, 상하 5%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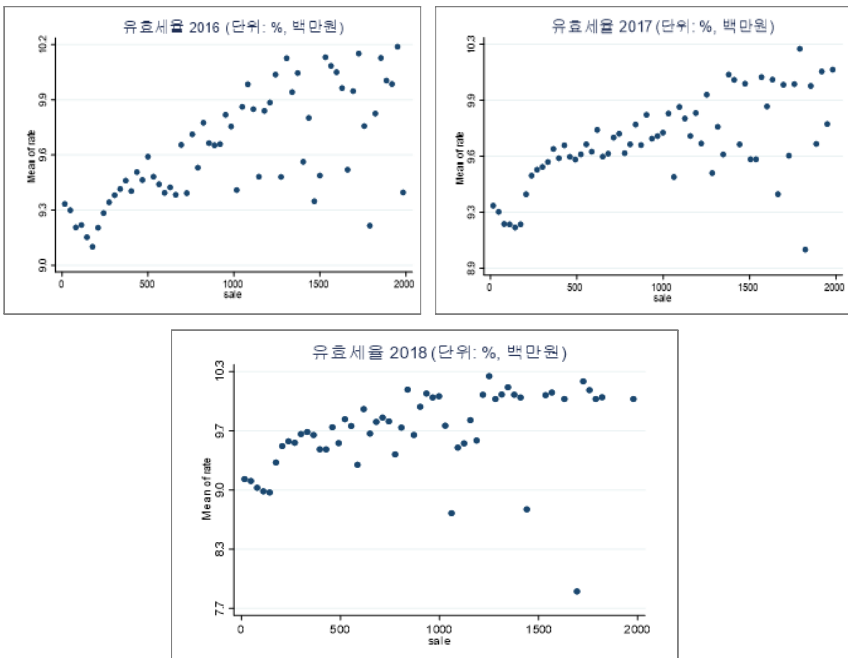
(단위: %)

신고기간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1기	2기	1기+2기	1기	2기	1기	2기	1기+2기	1기	2기	1기	2기
30백만원 미만	9.05	8.99	9.08	8.99	8.93	9.07	8.88	8.97	8.88	8.97	8.88	8.97
30백만원 이상	9.21	9.18	9.36	9.17	9.13	9.32	8.97	9.01	8.97	9.01	8.97	9.01
48백만원 이상	9.23	9.24	9.30	9.19	9.16	9.23	8.93	9.04	8.93	9.04	8.93	9.04
60백만원 이상	9.21	9.25	9.28	9.23	9.18	9.23	8.98	9.07	8.98	9.07	8.98	9.07
72백만원 이상	9.10	9.22	9.26	9.18	9.29	9.23	9.11	9.68	9.11	9.68	9.11	9.68
1억원 이상	9.25	9.46	9.27	9.41	9.63	9.26	9.45	9.30	9.45	9.30	9.45	9.30
2억원 이상	9.43	9.67	9.38	9.59	9.85	9.58	9.69	8.39	9.69	8.39	9.69	8.39
5억원 이상	9.85	9.98	9.60	9.85	10.0	9.77	9.90	13.2	9.90	13.2	9.90	13.2
10억원 이상	9.90	9.63	9.97	10.0	9.99	9.95	9.97	-	9.97	-	9.97	-
20억원 이상	9.42	8.99	9.57	9.90	9.94	10.0	9.49	9.92	9.49	9.92	9.49	9.92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2]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매출과표에 따라 표시하였다. 『국세통계연보』는 매출과표 구간별 집계 통계지만 제시하는 반면, 미시 자료를 활용하면 실제 매출과표 대비 실제 납부세액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매출과표가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양(+)의 상관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도별로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지만, 2018년 귀속의 경우 일부 고매출 사업자들의 부가세 유효세율 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 업종마다, 매출 규모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공제제도의 영향이 다른 부분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Ⅲ-2]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및 사업자 매출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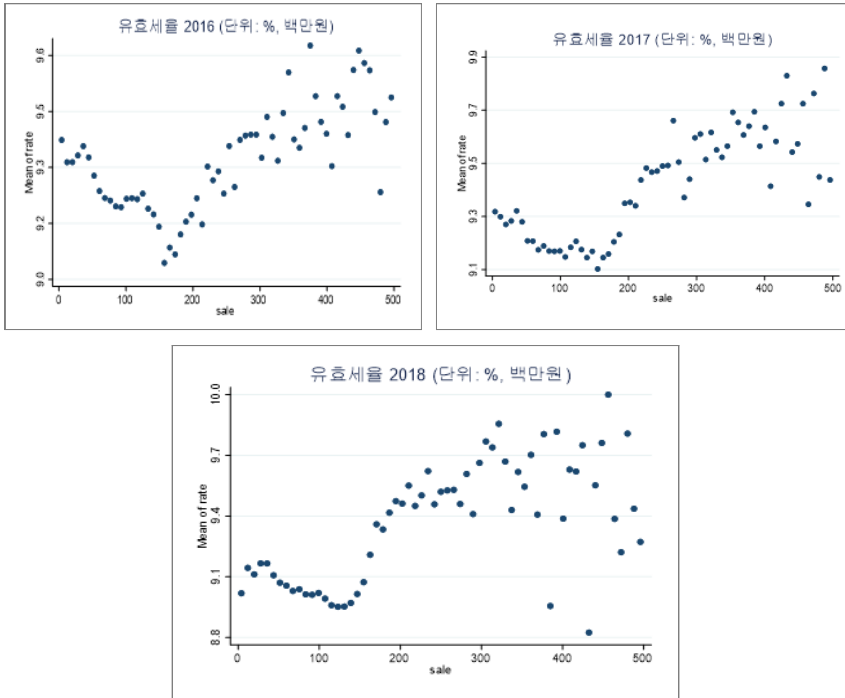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Ⅲ-3]은 사업자들의 매출과표 구간을 좁혀서 유효세율과 매출과표의 관계를 다시 살펴본다. 매출과표가 1억 5천만~1억 6천만원 구간까지는 부가

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업종별로 분포를 살펴봐야겠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우 거래 단계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중간 거래 단계의 면세 거래 포함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영향이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매출과표 2억원 미만의 사업자들이 2억원 이상의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출과표 1억 5천만원까지 부가가치세의 유효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가 사업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림 III-3]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및 사업자 매출과표(매출액 5억원 이하)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세통계연보』 자료 및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간이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와 달리 공급대가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금액에 대한 정보를 『국세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법인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매입과표를 정의해야 한다. 간이사업자의 공제 항목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또는 4/10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3/1,000 또는 26/1,000) 등이 있다. 앞선 법인 및 일반 사업자들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계산하기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매입금액의 추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국세통계연보』의 집계 통계자료로 추정하는 것의 측정 오차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으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를 <표 Ⅲ-12>에 제시한다. 또한 <표 Ⅲ-12>에서 제시한 통계는 실제 부가가치세 납세자료와의 비교를 위한 검토용으로 사용한다. 매입과표 추정은 단순하게 5%⁸⁾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여 간이사업자들의 부가가치 대비 실제 납부세액의 비율을 추정해 보면, 0.3%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간이사업자 자체가 일반 및 법인사업자들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납부세액 자체의 크기가 작은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이사업자들의

8) 간이사업자의 공제세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제율인 1.3% 또는 2.6%와 유사하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평균적 크기를 고려하여 가정하였다.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운영 중인 만큼, 이러한 통계가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2〉 간이사업자 매출, 매입과세표준, 부가가치 및 실 세수

(단위: 백만원, %)

연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	실 세수	유효세율
2014	28,735,159.1	5,235,420	23,499,739	80,100	0.34
2015	28,880,467.3	5,285,900	23,594,567	85,700	0.36
2016	29,430,117.3	5,648,600	23,781,517	82,700	0.35
2017	30,254,738.2	5,934,200	24,320,538	85,000	0.35
2018	29,628,799.1	5,743,620	23,885,179	101,200	0.42
2019	30,672,985.5	6,113,960	24,559,026	62,100	0.25
2020	30,670,783.6	5,596,540	25,074,244	51,100	0.2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의 〈9-1-2〉, 〈9-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IV.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제IV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유효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한다. 최종 소비자의 소비항목 구성에 따라 소득 계층별·연령별 소비자들의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면세 위주의 상품 구성에 소비가 많은 소비자들의 세 부담은 과세 위주의 상품 구성에 소비가 많은 소비자들에 비해 세 부담의 크기는 작겠지만, 면세 위주의 상품 구성 소비라 하더라도 앞서 추정한 유효세율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세 부담의 크기는 또 달라질 것이다.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실질적 세 부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정책 취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로 인한 역진적인 세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품 등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수준 혹은 재산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소득 계층 간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직관적 설명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사용한 실질적 세 부담 추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추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추이와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기존의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을 연계하여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을 계산하고, 또한 새롭게 제안한 유효세율의 값을 이용하여 2019년 기준 소비자 부담 분석에 시사점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산출

가. 분석자료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 대표 표본가구를 조사하는 설문으로서, 기초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1) 가계동향조사 구성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종류별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하고, 경상소득은 세분화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득 분류

소 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irmNo=101006>, 검색일자: 2022. 6. 28.

「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과 함께 소비지출 동향과 관련하여 12개의 대분류 단위로 구성된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2개 대분류 단위 아래 각각 소분류로 나누어 총 35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2〉 가계동향조사 가계지출 분류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
비소비지출: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등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cv/index.do?confirmNo=101006>,
검색일자: 2022. 6. 28.

2) 가계동향조사 변천

통계청에서는 2016년까지 지출과 소득을 연계시킨 가계수지조사를 통해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가계지출통계에 특화하여 연간주기 통계로 재편하였다. 소득통계는 행정자료를 이용해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면서 「가계동향조사」는 통계 작성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통계 정확성 제고 및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지출통계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런 개편으로 가계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분석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다시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통합 개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⁹⁾

9)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5. 21.

〈표 IV-3〉 가계동향조사 비교표

	~2016년	소득 부문(분기)	지출 부문(연간)	2019년 ^{1), 2)~}	
		2017~2019년 ¹⁾	2017~2018년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림어가 포함)	일반가구 (농림어가 포함)	
표본설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목적 표본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전용표본	
표본규모 (적격기준)	월 약 8,700가구	월 약 5,500가구 (2017년) 월 약 8,000가구 (2018~2019년)	월 1,000가구 (1/12 순환) 연간 약 12,000가구	월 약 7,200가구	
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연간조사표	가계부	
조사기간	36개월	36개월	1개월	12개월(6-6-6) ³⁾	
조사 항목	가구 실태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 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 연령·직업·산업	좌동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 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 연령, 가구주의 직 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 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 연령·직업·산업
	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좌동	전년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주: 1) 기존 분기 소득조사와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병행 실시
 2) 2019년 조사결과는 2020년 1/4분기 결과 공표 시 소급하여 공표
 3)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조사를 한 후,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

자료: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5. 21.

2016년 이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의 개념은, 우선 전국 가구는 도시 또는 비도시지역 가구원 2인 이상인 농어가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도시근로자가구는 도시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일반가구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도시가구는 도시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농어가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체가구는 전국가구에 1인 가구 및 농어가를 포함한 가구로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분배 작성 시 활용하고 있다.¹⁰⁾ 그리고 「가계동향조사」는 매 월 전국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2019년 이후부터는 매월 전국 7,200가구의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의 개념은 전국 2인 이상인 비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전국 가구는 도시 또는 비도시지역 가구원 2인 이상인 농림어가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의미하며, 도시근로자가구는 동 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농림어가를 제외한 일반가구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한다.¹¹⁾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방법대로 소비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거나,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추정할 때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정보는 필수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의 최신 자료 역시 2019년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유효세율의 크기를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2019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나. 가계동향조사 기초 통계

「가계동향조사」의 주요 변수인 소득과 소비 지출의 연도별 평균을 보면, 2019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77만원이었으며 지출 평균은 약 246만원이었다. 2020년 월평균 소득과 지출은 약 436만원과 240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과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해 본다. 월소득과 월지출은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음식(식료품 지출 포함)과 숙박, 교통 부문이었다. 소분류 단위에서는 학원 및 보습교육, 그리고 식사비(외식비 포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0)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5. 21.; 통계청,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 보도자료, 2016. 5. 27.

11)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5. 21.

〈표 IV-4〉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소비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소득	4,772	4,362	4,642
소비	2,457	2,400	2,495
식료품·비주류음료	333	381	397
주류·담배	36	38	39
의류·신발	138	118	126
주거·수도·광열	277	286	29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5	127	130
보건	202	221	226
교통	296	289	287
통신	123	120	124
오락·문화	180	140	143
교육	205	159	182
음식·숙박	346	310	338
기타 상품·서비스	206	204	20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5〉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등의 지출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식료품·비주류음료	333	381	397
곡류	19	19	20
곡물가공류	16	19	19
빵 및 떡류	22	25	26
육류	49	60	65
육류가공품	12	14	15
신선수산물	19	22	24
유제품	26	28	30
과일·과일가공품	38	40	43
채소·채소가공품	34	41	42
당류·과자류	25	27	27
기타식품 ¹⁾	20	24	25
주류·담배	36	38	39
주류	14	16	17
담배	22	22	22

〈표 IV-5〉의 계속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의류·신발	138	118	126
직물 및 외의	101	84	91
신발	19	17	18
주거·수도·광열	277	286	298
실제주거비	99	99	98
주택유지 및 수선	27	31	37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20	22	2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5	127	130
가구 및 조명	18	20	22
가전·가정용기기	37	41	39
가사소모품	12	14	14
가사서비스	15	13	16
보건	202	221	226
의약품	54	58	62
의료용소모품	6	15	9
외래의료서비스	64	63	69
치과서비스	31	35	34
입원서비스	33	36	38
교통	296	289	287
자동차구입	92	107	93
운송기구연료비	97	89	100
육상운송	20	18	17
기타운송 ²⁾	35	21	19
통신	123	120	124
통신장비	28	27	27
통신서비스	94	92	97
오락·문화	180	140	143
운동 및 오락서비스	27	20	22
문화서비스	42	39	42
단체여행비	48	10	5
교육	205	159	182
정규교육	57	45	42
학원·보습교육	141	112	136

〈표 IV-5〉의 계속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음식·숙박	346	319	338
식사비	334	309	325
숙박비	12	10	13
기타 상품·서비스	206	204	206
이미용서비스	32	27	27
위생 및 이미용용품	39	38	38
보험	84	89	92
기타서비스 ³⁾	24	26	23

- 주: 1) 동결식품, 반찬류, 김치, 죽 및 스프, 이유식 등
 2) 항공요금, 선박이용료 등 기타여행서비스 등 포함
 3) 혼례 및 장례례비, 부동산·일반·법무행정수수료 등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2.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유효세율

이번 절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소비 항목별로 소비자들의 실제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추정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은 크게 기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과 본고에서 새롭게 제안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유효세율의 값을 비교한다. 특히 소비자의 소득, 소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특징에 따른 이질성 분석을 한다. 이런 비교 분석에 앞서 소비자가 명목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도 살펴본다.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면세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가. 가계동향조사 소비항목별 유효세율 비교

기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과 본고에서 새롭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소비자의 소득, 소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특징에 따른 이질성 분석에 앞서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값을 비교하였다(〈부표 2〉 참고). 모든 항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값을 비교하면, 기존 Gottfried and Wiegard (1991)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의 유효세율 평균값은 8.41%이며, 새로운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업종코드별로 추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는 8.68%이다.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는 차이가 존재한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 품목의 경우 유효세율의 크기는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게 추정된다. 과세 재화는 기존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가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일부 10%를 하회한다. 예를 들어 판매양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앞선 분석 이론을 적용할 경우 유효세율의 크기는 10%를 초과하는 것이 맞다. 다만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할 때 약국이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면세가 혼용되는 경우 유효세율의 추정 값이 이론적 예측과 일부 달라질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병의원 외래진료비가 산업연관표에서는 4%대로 추정된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경우 7%대로 비교적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피부과 등의 경우 과세인 경우가 많고 이를 고려할 경우 유효세율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곡물구입비도 기존 방법을 이용한 유효세율의 평균값은 2.80%인 반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유효세율은 4.23%이다. 이들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긴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중간 단계의 중복과세 등의 영향으로 최종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나. 소비자의 명목 부가가치세 부담

이번 소절에서는 소비자가 명목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살펴본다. 명목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크기를 명목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비자의 명목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크기를 소비자 명목 유효세율이라고 한다.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특정 소비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혹은 면세됨으로 인

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1) 소비지출 항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에는 앞서 살펴본 소비의 소분류 항목보다 더 세세한 분류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교통비의 경우 자동차 구입비, 기타운송기구구입비, 운송기구유지수리비, 운송기구연료비, 철도운송금액, 육상운송금액, 기타운송금액 등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유효세율 추정할 때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각 항목별로 현재 부가가치세 과·면세 항목을 분류하여 응답자 개인별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로 한다. 이때 소비자 부담 유효세율의 정의는 각 응답자가 지출한 전체 소비에서 실제 납부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의 크기를 의미한다. 〈부표 2〉는 「가계동향조사」의 가장 작은 단위의 소비지출 항목들을 부가가치세 과·면세로 분류한 것이다.

세부 소비항목들을 과·면세로 분류하긴 하였으나,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철도운송 등의 여객운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KTX,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서 조제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그 밖의 약품 구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구분이 어렵다. 외래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성형, 피부미용 등의 외래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그 밖의 외래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치과도 충치, 교정 치료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인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약으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정확히 분류하기 어렵다. 〈부표 3〉에서 과·면세를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의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면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과세와 면세로 각각 간주하여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의 범위를 살펴본다. 각 개별 소비자별

로 과세 품목에 대한 지출을 계산한 후, 이들 과세 품목의 10/110을 개별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로 정의한다.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은 개별 소비자가 지출한 전체 소비금액 대비 과세 품목에 이들 소비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로 계산한다. 추정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소비지출액을 비교하여 명목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계산 결과는 <표 IV-6>에 제시한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은 6~7%대로, 부가가치세 표준 명목세율인 10%보다 작다. 소비자들이 면세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총 지출액 대비 1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표 IV-6〉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과·면세 구분 어려운 경우 과세로 간주	7.07 (7.31)	7.00 (7.22)	7.00 (7.20)
과·면세 구분 어려운 경우 면세로 간주	6.36 (6.43)	6.22 (6.29)	6.20 (6.26)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2) 소득 구간별 명목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이 소득 및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이질적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 연도별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따른 소득 계층별 세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의 월별 소득 구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크기를 <표 IV-7>에서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의 명목 유효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가구의 소득 구간이 중간 소득(300만~400만원)인 경우, 명목 유효세율 부담의 크기가 가장 컸다.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긴 하지만, 중위소득 구간과 상위소득 구간의 유효 세 부담의 역진성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면세 분류가 애매한 품목을 모두 면세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의 감소 폭은 저소득일수록 단조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애매하게 분류된 품목의 경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떠안는 세 부담의 크기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면세 전환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표 IV-7>과 <표 IV-8>의 유효세율 값은 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분석한 박명호·정재호(2014)의 추정 값과 차이가 있다. 박명호·정재호(2014)의 경우 산업연관표와의 결합을 통한 분석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절에서의 간단한 분석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증가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합리화를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일 수 있다.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통해 살펴본 소비자 부담은 다음 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표 IV-7〉 최종 소비자의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가구 월 소득	2019		2020		2021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100만원 미만	6.98	5.61	6.91	5.55	6.93	5.61
100만~200만원 미만	6.95	5.80	6.88	5.64	6.88	5.61
200만~300만원 미만	7.06	6.35	7.03	6.21	7.01	6.16
300만~400만원 미만	7.23	6.63	7.12	6.44	7.11	6.37
400만~500만원 미만	7.16	6.64	7.14	6.55	7.08	6.51
500만~600만원 미만	7.14	6.75	7.05	6.56	7.05	6.51
600만~700만원 미만	7.04	6.70	7.03	6.56	6.98	6.50
700만원 이상	7.07	6.87	6.98	6.58	6.96	6.54

주: 과·면세 구분 어려운 경우 전부 과세로 간주한 경우와 전부 면세로 간주한 경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3) 연령별 명목 부가가치세 부담

추가적인 이질성 분석으로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비교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생필품 위주로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될 것

을 예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과세 소비를, 고령층은 면세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 연령대별로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과·면세 구분이 애매한 경우 과세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을 추정하면, 고령으로 갈수록 유효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결과를 뚜렷이 관찰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과·면세 구분이 애매한 경우 면세로 처리하여 유효세율을 계산하면, 고령으로 갈수록 유효세율의 크기는 감소한다. 또한 과세를 가정한 경우에서 면세로 가정한 경우 유효세율의 경감이 고령층일수록 뚜렷하다는 점은, 애매한 품목으로 정의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부표 2>에서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면세와 과세가 모호한 경우 처리 방식에 따라 명목 유효 세 부담의 결과 값이 달라졌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책 취지를 잘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8〉 최종 소비자의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응답자 연령	2019		2020		2021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대	6.95	6.80	6.98	6.86	7.06	6.99
30대	7.28	7.03	7.24	7.00	7.27	7.01
40대	6.73	6.42	6.75	6.36	6.72	6.30
50대	7.10	6.61	6.99	6.38	6.95	6.33
60대	7.22	6.35	7.11	6.10	7.09	6.05
70대	7.17	5.70	7.06	5.45	7.06	5.47
80대 이상	7.02	5.15	6.93	5.07	6.93	5.06

주: 과·면세 구분 어려운 경우 전부 과세로 간주한 경우와 전부 면세로 간주한 경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4) 가구원 수별 명목 부가가치세 부담

다음으로 가구원 수별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 결과, 가구원 수가 2~3명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면세 구분이 애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과세로 가정한 경우에 비해 면세로 가정한 경우 유효세율의 경감이 2인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애매한 품목으로 정의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이들 2인 가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1인 가구에서 이러한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이런 특징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연령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은 20대와 유사하고, 2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은 30대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생활필수 위주이기에, 앞서 연령별 분석에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과세 소비 비중이, 고령층은 면세 소비 비중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서 가구 구성원의 연령 분포가 다양해지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최종 소비자의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소비 분위	2019		2020		2021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1명	6.96	6.11	6.92	6.05	6.96	6.11
2명	7.28	6.38	7.17	6.13	7.28	6.38
3명	7.18	6.73	7.09	6.54	7.18	6.73
4명	6.76	6.41	6.77	6.40	6.76	6.41
5명	6.64	6.22	6.67	6.14	6.64	6.22
6명 이상	6.85	6.45	6.84	6.52	6.85	6.45

주: 과·면세 구분 어려운 경우 전부 과세로 간주한 경우와 전부 면세로 간주한 경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5) 소비 분위별 명목 부가가치세 부담

다음으로 소비 분위별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소득 집단일수록 소비 분위 역시 상위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

만, 소득 분위와 소비 분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소득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소비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명목 유효 세 부담이 달라지는지 검토한다. <표 IV-10>은 「가계동향조사」의 개인별 소비 총지출을 기준으로 소비 분위기를 나누어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소득에 따른 실질적 유효 세 부담은 소득 분위기를 나눌 수 없어, <표 IV-10>과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다만 전반적인 추이는 앞선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유효 세 부담과 비슷하여,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변수의 차이에 따른 유효 세 부담의 상대적 차이는 크게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0〉 최종 소비자의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소비 분위	2019		2020		2021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1분위	6.99	5.64	6.92	5.58	6.97	5.64
2분위	6.97	5.81	6.99	5.84	6.91	5.85
3분위	7.09	6.20	6.93	6.00	6.97	6.02
4분위	7.12	6.30	7.02	6.14	7.06	6.22
5분위	7.17	6.45	7.07	6.28	7.10	6.31
6분위	7.18	6.56	7.12	6.34	7.11	6.39
7분위	7.12	6.63	7.10	6.54	7.04	6.34
8분위	7.09	6.58	7.02	6.36	7.01	6.36
9분위	6.98	6.58	6.91	6.44	6.90	6.36
10분위	7.04	6.89	7.02	6.64	6.91	6.54

주: 과·면세 구분 어려운 경우 전부 과세로 간주한 경우와 전부 면세로 간주한 경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소득 분위별, 소비 분위별 기준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대한 수요의 차이 등에 따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같더라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표 IV-11>은 개인의 소비를 경제적 능력 변수로 가정하고, 소비 분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의 표준편차 값을 제시하였다. 2021년을 살펴보면, 소비 분위가 중위 구간에 포함된 집단일수록 유효세율의 표준편차 값이 작았다. 이 집단에 포함된 개인들의 경우, 유사한 경제적 능력과 유사한 형태의 소비 행위가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애매한 품목의 경우를 면세로 분류하여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현상은 유사하게 관찰된다.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소비 행위의 균질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즉 앞서 살펴본 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집단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보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11〉 최종 소비자의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표준편차

(단위: %)

소비 분위	2019		2020		2021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1분위	1.28	1.56	1.32	1.51	1.18	1.45
2분위	1.27	1.57	1.19	1.51	1.19	1.52
3분위	1.19	1.50	1.18	1.48	1.09	1.43
4분위	1.08	1.43	1.08	1.44	1.06	1.43
5분위	1.09	1.55	1.03	1.39	1.06	1.45
6분위	1.02	1.43	1.03	1.39	1.03	1.40
7분위	1.08	1.46	1.04	1.47	1.11	1.52
8분위	1.12	1.52	1.13	1.51	1.11	1.40
9분위	1.17	1.56	1.15	1.50	1.16	1.45
10분위	1.33	1.86	1.33	1.74	1.36	1.69

주: 과·면세 구분 어려운 경우 전부 과세로 간주한 경우와 전부 면세로 간주한 경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지금까지 살펴본 명목 유효 세 부담은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소비자출액과 과세 품목 지출 기준의 추정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과·면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세율을 계산하고, 세 부담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일부 역진성을 완화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간단한 세 부담 계산을 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중간 거래 단계에서 소비자로의 세 부담 전가 등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부담 전가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소비자 세 부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 소비자 부가가치세 부담의 유효세율(Gottfried and Wiegard(1991) 방법)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사용하고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출해 본다. 산업연관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계동향조사」의 2020년과 2021년의 품목별 유효세율은 산업연관표 2019년 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V-12>는 최종 소비자의 유효세율 평균값을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2019년 평균은 7.24%, 2020년은 7.28%, 2021년은 7.29%로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유효세율의 평균값은 앞선 <표 IV-6>에서 추정된 유효세율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과·면세 분류가 모호한 품목에 대해 면세로 분류한 후 추정된 유효세율의 평균값에 비해서는 1%p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앞서 사업자들의 세 부담 전가 등의 행태에 따라 소비자의 실제 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등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표 IV-12>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Gottfried and Wiegard(1991)	7.24 (7.37)	7.28 (7.43)	7.29 (7.42)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1)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부담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유효 세 부담의 이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3>은 소득구간별로 살펴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평균값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유효세율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연도별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이질성은 기본적으로 앞선 명목 유효세율 크기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소득구간에서 앞 절에서 계산한 명목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IV-13> Gottfried and Wiegard(1991)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가구 월 소득	2019	2020	2021
100만원 미만	6.95(7.04)	6.94(7.11)	6.95(7.04)
100만~200만원 미만	6.99(7.12)	6.98(7.14)	6.99(7.12)
200만~300만원 미만	7.25(7.38)	7.23(7.33)	7.25(7.38)
300만~400만원 미만	7.38(7.47)	7.39(7.52)	7.38(7.47)
400만~500만원 미만	7.43(7.52)	7.46(7.55)	7.43(7.52)
500만~600만원 미만	7.47(7.56)	7.49(7.61)	7.47(7.56)
600만~700만원 미만	7.46(7.51)	7.50(7.60)	7.46(7.51)
700만원 이상	7.51(7.62)	7.49(7.61)	7.51(7.62)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2) 연령별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 변화를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80대 이상의 고령층은 유효세율이 7%를 하회하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그다음으로는 20대 젊은 연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30대에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게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의 과세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0대의 경우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자녀 교육 소비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30대에 비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작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IV-15〉의 연령대별 지출 비중을 보면 고령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대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높게 나온 30대는 출산과 육아라는 특징이 있는데, 의료비와 영육아용 기저귀와 분유, 양육 등의 가사서비스는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 중에 있다. 30대는 지출항목 중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볼 때, 음식·숙박비, 의류·신발,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표 IV-14〉 Gottfried and Wiegard(1991) 연령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응답자 연령	2019	2020	2021
20대	7.29(7.34)	7.20(7.29)	7.29(7.34)
30대	7.54(7.72)	7.52(7.73)	7.54(7.72)
40대	7.36(7.41)	7.36(7.44)	7.36(7.41)
50대	7.37(7.51)	7.39(7.53)	7.37(7.51)
60대	7.28(7.42)	7.26(7.43)	7.28(7.42)
70대	7.03(7.18)	7.04(7.22)	7.03(7.18)
80대 이상	6.84(7.05)	6.82(7.05)	6.84(7.05)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5〉 연령대별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8.6	12.3	13.4	14.9	20.9	26.8	27.9
주류·담배	1.9	1.9	1.9	2.0	2.1	1.4	0.9
의류·신발	6.7	6.4	5.8	5.8	4.9	3.7	2.6
주거·수도·광열	19.8	12.3	11.4	12.9	14.5	18.0	21.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2.7	4.8	4.2	4.0	4.1	4.6	7.0
보건제품비	4.1	6.5	6.3	7.9	11.3	16.0	17.9
교통비	10.6	11.4	10.0	11.2	9.9	6.2	4.5
통신비	5.5	5.5	5.8	6.1	5.0	3.6	2.8

〈표 IV-15〉의 계속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오락·문화비	7.5	7.5	6.5	5.9	5.4	4.3	2.8
교육비	3.2	5.1	11.9	4.7	0.7	0.4	0.2
음식·숙박비	22.4	17.4	14.9	15.1	12.4	8.3	6.7
기타 상품·서비스	6.9	9.0	8.0	9.4	8.9	6.5	5.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3)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부담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유효세율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증가하여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를 최고점으로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령대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부담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근래 들어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도 전체 가구 분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30% 정도로, 각각 35% 정도를 차지하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비중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은 약 7% 정도로 다른 가구원 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앞선 연령대별 논의에서 살펴본 20대보다도 더 낮은 유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젊은 20대 이외에 고령층 등 다른 연령층도 포함된 결과로 여겨진다.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의 크기가 70대 고령층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표 IV-16〉 Gottfried and Wiegard(1991)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가구원 수	2019	2020	2021
1명	7.00(7.15)	7.03(7.17)	7.06(7.18)
2명	7.28(7.41)	7.31(7.45)	7.32(7.42)
3명	7.45(7.56)	7.48(7.60)	7.51(7.62)

〈표 IV-16〉의 계속

(단위: %)

가구원 수	2019	2020	2021
4명	7.36(7.42)	7.46(7.54)	7.42(7.46)
5명	7.29(7.33)	7.40(7.42)	7.44(7.41)
6명 이상	7.28(7.31)	7.51(7.59)	7.40(7.44)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4)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표 IV-17〉은 소비지출을 경제적 능력으로 간주하고, 소비지출의 분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평균값을 제시한다. 소득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비지출이 많은 계층일수록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표 IV-10〉의 경우, 소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효세율이 단조적으로 계속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소득과 소비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할 때, 소비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과세 소비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유효세율의 크기도 큰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V-17〉 Gottfried and Wiegard(1991)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소비 분위	2019	2020	2021
1분위	7.00(7.16)	7.02(7.22)	7.06(7.19)
2분위	6.98(7.19)	7.09(7.24)	7.07(7.20)
3분위	7.15(7.30)	7.09(7.22)	7.14(7.23)
4분위	7.22(7.33)	7.18(7.34)	7.24(7.37)
5분위	7.29(7.43)	7.29(7.42)	7.30(7.43)
6분위	7.35(7.50)	7.39(7.54)	7.35(7.46)
7분위	7.35(7.47)	7.44(7.57)	7.42(7.56)
8분위	7.35(7.49)	7.42(7.56)	7.40(7.52)
9분위	7.33(7.42)	7.42(7.55)	7.43(7.53)
10분위	7.39(7.46)	7.49(7.59)	7.50(7.55)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과의 해석에서는 단순 명목 유효세율 산출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절대적인 유효세율의 크기가 커진 것은 앞선 거래 단계의 세 부담 전가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간 역진성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유효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앞선 방법이든 Gottfried and Wiegard(1991) 방법이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절대적인 수준의 세 부담 경감의 추정 등에 있어서는 유효세율의 크기가 차이 나는 만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으로 추정한 유효세율 크기를 검토한다.

라. 소비자 부가가치세 부담의 유효세율(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표 IV-18〉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유효세율의 평균값을 연도별로 제시한다.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소비자들은 평균 약 7.6%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 단계의 면세로 인한 세 부담 전가 등이 앞선 추정방법들에 비해 더 많이 반영되어, 앞에서 분석한 유효세율의 평균값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앞서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2019년의 유효세율을 추정한 이후, 유효세율의 크기가 2020년과 2021년에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후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유효세율의 평균값은 앞선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결과보다 약간 크게 산출되었다. 분석방법에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 크기가 뚜렷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8〉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7.61(7.72)	7.63(7.75)	7.63(7.74)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1)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은 증가한다. 1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의 2019년 유효세율 평균은 7.45%인 반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는 7.73%를 부담한다. 「가계동향조사」의 2019년 최저소득 집단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약 86만원, 최고소득 집단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약 435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최저소득 집단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평균 5만 9천원이며, 최고소득 집단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평균 31만원으로, 절대적인 차이는 월평균 약 26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저소득 집단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약 30%로, 절대적인 액수나 상대적인 비중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단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V-19〉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구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가구 월 소득	2019	2020	2021
100만원 미만	7.45(7.56)	7.47(7.58)	7.45(7.56)
100만~200만원 미만	7.48(7.60)	7.48(7.61)	7.48(7.60)
200만~300만원 미만	7.63(7.72)	7.62(7.72)	7.63(7.72)
300만~400만원 미만	7.70(7.78)	7.71(7.82)	7.70(7.78)
400만~500만원 미만	7.70(7.78)	7.73(7.82)	7.70(7.78)
500만~600만원 미만	7.72(7.80)	7.73(7.88)	7.72(7.80)
600만~700만원 미만	7.70(7.77)	7.74(7.84)	7.70(7.77)
700만원 이상	7.73(7.84)	7.71(7.83)	7.73(7.84)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2) 연령별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 앞선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과 절대적

인 크기는 다르지만, 연령별 유효세율 변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소비가 많은 70대 이상 고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그다음으로는 20대의 젊은 연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30대에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 교육 소비지출이 많은 40대는 30대에 비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은 작게 나타났다.

2020년은 코로나19 직후의 연도인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대의 경우 유효세율이 2019년에 비해 낮게 추정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20대의 소비 구성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음식·숙박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면세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유효세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명목 유효세율 추정에서는 관찰하기 어렵고, Gottfried and Wiegard(1991)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관찰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표 IV-20〉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연령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응답자 연령	2019	2020	2021
20대	7.74(7.76)	7.66(7.72)	7.74(7.76)
30대	7.83(7.96)	7.82(7.97)	7.83(7.96)
40대	7.62(7.67)	7.63(7.69)	7.62(7.67)
50대	7.66(7.77)	7.69(7.80)	7.66(7.77)
60대	7.62(7.75)	7.61(7.76)	7.62(7.75)
70대	7.48(7.62)	7.51(7.67)	7.48(7.62)
80대 이상	7.39(7.56)	7.39(7.57)	7.39(7.56)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3)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유효세율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증가하여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를 최고점으로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4명인 경우에는 앞서 연령대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가구원 수 2~3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근래 들어 증가하는 1인 가구도 앞선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들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은 다른 가구원 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앞선 70대 이상의 고령층 및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의 유효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과 유사하다.

〈표 IV-2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가구원 수	2019	2020	2021
1명	7.49(7.61)	7.51(7.62)	7.51(7.61)
2명	7.64(7.76)	7.66(7.79)	7.66(7.77)
3명	7.74(7.84)	7.75(7.87)	7.76(7.85)
4명	7.63(7.68)	7.69(7.77)	7.66(7.71)
5명	7.59(7.65)	7.65(7.69)	7.68(7.71)
6명 이상	7.67(7.75)	7.78(7.92)	7.66(7.74)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4)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표 IV-22〉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소비 분위별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높은 세 부담이 가지만, Gottfried and Wiegard(1991)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비수준과 유효세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소비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유효세율의 크기가 뚜렷하게 작아, 이들 계층에서 상대적인 세 부담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표 IV-2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비 분위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평균

(단위: %)

소비 분위	2019	2020	2021
1분위	7.55(7.67)	7.55(7.68)	7.55(7.66)
2분위	7.52(7.64)	7.55(7.66)	7.53(7.63)
3분위	7.58(7.69)	7.52(7.61)	7.56(7.61)
4분위	7.61(7.71)	7.59(7.67)	7.61(7.71)
5분위	7.64(7.75)	7.66(7.75)	7.64(7.75)
6분위	7.67(7.80)	7.69(7.84)	7.67(7.76)
7분위	7.67(7.75)	7.72(7.83)	7.70(7.82)
8분위	7.65(7.77)	7.69(7.84)	7.69(7.80)
9분위	7.61(7.72)	7.67(7.79)	7.67(7.79)
10분위	7.63(7.75)	7.70(7.85)	7.71(7.82)

주: () 안은 중간값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본고에서 제시한 유효세율의 추정 값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계산한 유효세율의 분포가 기존의 방법들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유효세율의 크기가 다른 방법론에 비해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정부 공제 정책의 반영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소결

가. 방법론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비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추정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유효세율 추정의 각 방법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소비자의 소득, 소비, 연령 등의 특징에 따른 이질성 분석 결과 해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각 방법론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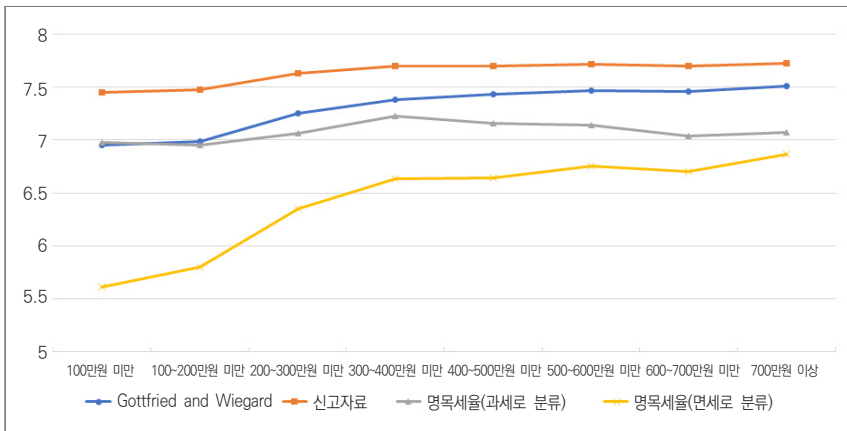
[그림 IV-1]~[그림 IV-4]는 앞서 살펴본 각 방법론의 분석 결과를 비교·정리하였다. [그림 IV-1]은 소비자의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

를 비교하였고, [그림 IV-2]는 소비자의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그림 IV-3]은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그리고 [그림 IV-4]는 소비자의 소비수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서 각각 추정한 유효세율의 추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방법론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보다 컸다. 소비자의 명목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는 소비자의 소득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그리고 소비지출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 완화 및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1] 소비자의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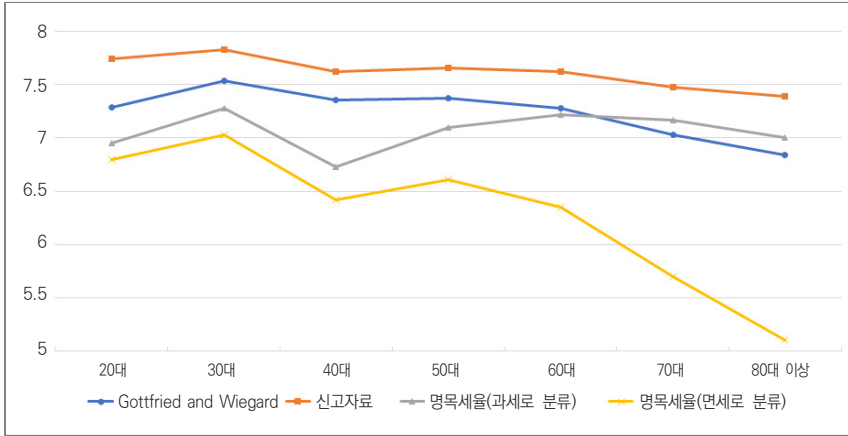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2] 소비자의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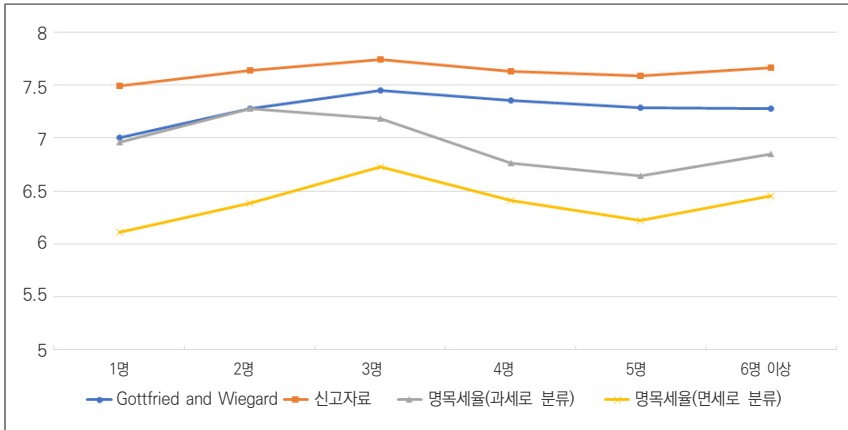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3] 소비자의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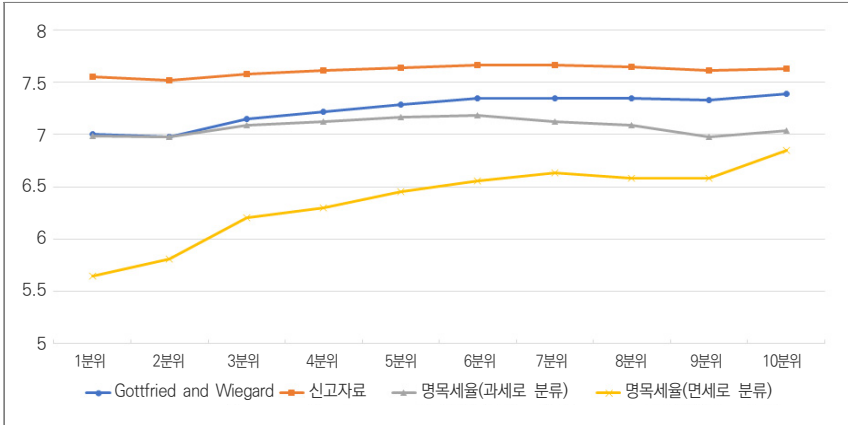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4] 소비자의 소비수준별 유효세율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본고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이유는 실제 신고자료의 활용과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유효세율 추정을 통해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추정 결과,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의 크기는 기존의 방법론에서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다.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은 중간 거래 단계의 세 부담 전가, 가격 전가, 그리고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각종 공제제도의 영향 등을 고려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이러한 공제제도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와 비교하여 보다 크게 산출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실제로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세 부담 전가의 행태는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여, 면세 거래 등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한 최종 소비자의 부담은 기존에 추정하였던 것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로는 세 부담 전가는 본고에서 제시한 부담 정도보다 더 크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일부 세 부담을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개입이 없었다면, 실제 유효 세 부담은

더 크게 추정되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정책 등이 사업자들만을 지원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은 사업자들이 누리는 반면, 가격 전가 및 세 부담 전가는 여전히 그대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세 번째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세 부담 전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조세부과 전후의 가격 변화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세 부담 전가가 이런 현상의 확실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고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제 등의 영향으로 다음 거래 단계로의 전가 현상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사업자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일부 혜택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간 단계의 면세가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추가 왜곡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저소득 계층 혹은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유효세율 추정을 보다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정부 정책 개입의 여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정책 수립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소득수준별 품목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비교

마지막으로 기존 방법론과 본고의 방법론을 통해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를 소분류 품목별로 소비자의 이질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소득수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V-23>과 <표 IV-24>는 현재 대표적인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기존 방법과 본고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보여

준다.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액 대비 추정된 유효세율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해당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 IV-23>의 애완동물서비스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지불한 전체 부가가치세 규모 대비 애완동물서비스에 실질적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0.082%인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약 0.225%를 평균적으로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층이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또 서비스 금액에 지불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중의 계산을 기존 방법과 본고의 방법으로 각각 표시한 것이다. 근래 들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애완동물과 커피차, 그리고 전통적인 담배, 주류,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곡물과 육류구입 등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성인학원 및 학원보습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표 IV-24>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을 계산하였다.

기존 방법을 사용한 결과와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의 값의 해석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일부 세부적인 함의가 다를 수는 있다. <표 IV-23>의 애완동물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은 두 방법 모두 동일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난다. 물론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구입비 역시 고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컸지만, 담배와 주류, 커피차는 저소득층에서 부가가치세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컸다. 특히 담배구입비의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표 IV-24>의 외래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임에도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가 본고의 방법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크게 계산된다. 따라서 의료비의 실질적 부담 정도가 예상된 수준보다 더 크고, 그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곡물구입, 육류구입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절대적인 부담의 크기도 기존에 비해 더 크게 추정됨에 따라, 육류 등의 판매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일부 왜곡을 정부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성인학원비, 학원보습교육비 등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고소득 계층에서의 수요가 더 클 것이고, 면세 대상인 사교육의 수혜는 고소득층이 더 본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 IV-24>에서 보듯이, 현재 시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부담은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도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표 IV-23〉 소득수준별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전체 부담 대비 일부 과세 품목의 부가가치세 비교

(단위: %)

가구 월소득	에인동물서비스		에인동물관련물품 구입비		담배구입비		주류구입비		자동차구입비		커피차구입비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100만원 미만	0.082	0.082	0.277	0.281	2.099	2.154	0.854	0.923	0.035	0.038	0.749	0.835
100만~200만원 미만	0.089	0.089	0.267	0.268	1.887	1.888	0.918	0.981	0.424	0.444	0.597	0.655
200만~300만원 미만	0.177	0.178	0.394	0.393	1.874	1.849	0.802	0.848	0.815	0.844	0.568	0.614
300만~400만원 미만	0.247	0.246	0.355	0.352	1.817	1.769	0.800	0.834	1.188	1.229	0.480	0.509
400만~500만원 미만	0.165	0.164	0.229	0.224	1.331	1.289	0.779	0.809	2.048	2.101	0.447	0.473
500만~600만원 미만	0.208	0.205	0.256	0.252	1.222	1.174	0.737	0.764	1.889	1.964	0.420	0.445
600만~700만원 미만	0.171	0.169	0.218	0.214	1.020	0.990	0.694	0.719	2.089	2.154	0.401	0.424
700만원 이상	0.225	0.220	0.214	0.209	0.773	0.741	0.617	0.639	2.972	3.056	0.368	0.38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4〉 소득수준별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전체 부담 대비 일부 면세 품목의 부가가치세 비교

(단위: %)

가구 월소득	꼭물구입비		육류구입비		서적구입비		성인학원비		학원보습교육비		외태의료서비스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본고	기준
100만원 미만	1.675	1.140	3.660	3.102	0.161	0.183	0.091	0.071	0.284	0.281	5.075	3.046
100만~200만원 미만	1.420	0.951	3.518	2.953	0.215	0.237	0.153	0.119	0.540	0.529	4.590	2.696
200만~300만원 미만	0.861	0.568	2.989	2.468	0.271	0.300	0.192	0.148	1.071	1.041	3.188	1.812
300만~400만원 미만	0.632	0.409	2.771	2.260	0.372	0.403	0.140	0.106	1.626	1.558	3.185	1.790
400만~500만원 미만	0.553	0.354	2.766	2.236	0.404	0.439	0.190	0.143	2.753	2.639	2.929	1.634
500만~600만원 미만	0.390	0.248	2.649	2.137	0.480	0.515	0.269	0.204	3.114	2.973	2.629	1.459
600만~700만원 미만	0.487	0.317	2.639	2.129	0.536	0.576	0.220	0.166	4.022	3.819	2.707	1.513
700만원 이상	0.327	0.209	2.325	1.871	0.602	0.647	0.300	0.227	4.169	3.963	2.619	1.46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추정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방법론은 물론이고 새롭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45여 년 동안 10%로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도 국가별로 추구하는 정책 목적, 사회·경제적 환경, 국민들의 인식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산업별·업종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면 경제적 비효율의 왜곡이 산업 전반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왜곡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이 중요하다. 또한 최종 소비자마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유효세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생필품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실제 상대적 부담의 정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효세율을 살펴보는 것은 면세 범위의 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는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자주 이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은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분석한다.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최종 거래 단계까지 포함되는 중간 과세 거래 및 면세 거래의 비중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한다. 이처럼 과세와 면세 거래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산업연관표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알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의 연계가 필요한데,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연관표에서 가구는 목재가구, 철제가구 등 가구 산업이 중요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는 소파, 식탁, 책상, 의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둘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면세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가 발생하면 모두 전가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분석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산업연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 그리고 각종 공제 제도도 포함할 수 없었다.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그동안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기존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처음 시도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다른 세목들의 유효세율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추정되었다.

국세청 신고자료에는 면세로 인해 가격 전가는 물론 의제매입세액, 각종 공제제도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선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업종 구분을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과 연계시키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다만 국세청 신고

자료에는 거래단계별 면세 업종의 사용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신고자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자료이기에 여기에 고의적 혹은 실수로 신고 누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신고 오류에 의해 혹은 탈세 등으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의 방법론에서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중간 거래 단계의 세 부담 전가, 가격 전가, 그리고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각종 공제 제도의 영향 등을 고려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법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보다 크게 산출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실제로는 세 부담 전가가 본고에서 제시한 부담 정도보다 훨씬 크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일부 세 부담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정부 정책의 개입이 없었다면, 실제 유효 세 부담은 훨씬 더 크게 추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저소득 계층 혹은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유효세율 추정을 보다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을 추정된 결과,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소비자의 소득, 소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특징에 따른 이질성 분석 결과 해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의 방법론에서 추정된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어, 각 방법론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소득수준별로 이질적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가 생필품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혜택은 고령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고, 그다음으로는 20대 젊은 연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30대에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출산과 육아라는 특징이 있지만 의료비와 영육아용 기저귀와 분유, 양육 등의 가사서비스는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 중에 있다. 소비지출 항목을 분석한 결과, 30대는 음식·숙박비, 의류·신발,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과세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녀 교육 소비지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30대에 비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이 작게 나타났다.

20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 낮게 추정되었다. 2020년에 20대의 소비 구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음식·숙박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유효세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명목 유효세율 추정에서는 관찰하기 어렵다.

가구원 수별로 나누어 유효세율의 크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이 증가하여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를 최고점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령대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부담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근래 들어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도 전체 가구 분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은 7% 정도로, 다른 가구원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앞선 연령대별 분석에서 살펴본 70대 이상의 고령층 및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의 유효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과 유

사하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직면하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면세제도 조정에 따른 과급효과도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 당국의 면세제도 조정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비지출을 경제적 능력으로 간주하고 소비지출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 분위별 분석에서는 유사한 결과도 출되었으며, 기존 연구방식을 사용했을 때 소비수준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비수준이 낮은 계층의 유효세율이 뚜렷하게 작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가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고 과·면세가 혼재된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로 혹은 면세로 가정해서, 과세인 경우와 면세인 경우 각각 명목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추정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면세 재화를 과세 재화로 전환하였을 때의 소득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그리고 소비지출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과·면세 분류가 애매한 경우 모두 면세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명목 유효세율의 감소 폭은 저소득일수록 단조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이들 품목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떠안는 세 부담의 크기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면세 전환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단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면세 구분이 애매한 경우 면세로 전환할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유효세율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의료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효 세 부담의 결과 값이 달라졌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정책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명목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 완화 및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면세로 혹은 면세 재화를 과세로 전환할 때 거래 단계, 재화의 성격, 소득수준, 소비연령 및 가구원 구성 등도 종합적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방법과 본고의 방법을 통해 추정한 유효세율의 크기를 소분류 품목 별로 소비자의 이질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애완동물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은 두 방법 모두 동일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대적 부담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할 때 미미하지만 더 크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외래의료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에도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가 본고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훨씬 더 크게 계산된다. 따라서 의료비의 실질적 부담 정도가 예상된 수준보다 더 크고, 그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육류구입, 곡물구입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절대적인 부담의 크기도 기존에 비해 더 크게 추정됨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한 일부 왜곡을 정부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반면 성인학원비, 학원보습교육비 등 면세 대상인 사교육은 고소득 계층에서의 수요가 더 커서 면세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본다고 주장할 수 있지

만, 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부담은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도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사교육의 면세로 인해 고소득 계층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서 각각 추정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각 방법별 유효세율 변화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명목 유효세율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종 소비 금액과 과·면세 지출 구성을 통한 명목 유효세율의 추정은 실제 세 부담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같은 대분류 산업군이라고 해도 30년의 기간 동안 그 구성이 변화하고 규모가 달라져서 정확하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하면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에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명목세율인 10% 내외에 분포해 산업별 부가가치세 세 부담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업들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일반 품목들로 구성된 산업들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축소(과세 범위 확대)됨으로써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면세 재화보다 과세 재화의 소비 비중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은 해당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의 투입 비중이 더 커진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농림수산물, 광산물, 그리고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감소하고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1990년에는 4.62%였는데, 2019년에는 2.40%까지 감소하였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군의 면세 범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의 비중이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여겨진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추적·조사하는 연구 수행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과거의 부가가치세제도 운용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의 방향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이유는 중간 거래 단계의 가격 전가 및 세 부담 전가,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각종 공제제도의 영향 등의 행태가 모두 반영된 국세청 신고자료의 활용과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유효세율 추정 가능성을 통해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분석 결과, 중간 거래 단계의 가격 전가 및 세 부담 전가가 예상보다 클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등의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일부 세 부담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가격 및 세 부담 전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공제제도는 결국 중간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저소득 계층 등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이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술적으로 추후 새로운 방법론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의 가격효과 및 재분배효과, 그리고 세율 조정에 따른 사업별, 소비자계층별 유효세율 변화 등의 파급효과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더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2020년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4. 부가가치세』, 2017. 6.
- 기획재정부, 『2011 간추린 개정세법』~『2020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_____,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1. 7. 26.
- 김유찬, 「유효부가가치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재정정책논집』, 제15권 제4호, 2013, pp. 183~212.
- _____, 「유효부가가치세율의 계산과 이를 통한 VAT Gap의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주요 EU 국가 3국의 비교」,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2016, pp. 189~232.
- 박명호·정재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성명재,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2013, pp. 189~223.
- 통계청,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 보도자료, 2016. 5. 27.
- _____,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5. 21.
- _____, 「가계동향조사」, 2017~2021년 자료(데이터).

〈외국 문헌〉

- Benzarti, Y. and Carloni, D., “Who really benefits from consumption tax cuts? Evidence from a large VAT reform in Fra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1), 2019, pp. 38~63.
- Chetty, R., Looney, A., and Kroft, K., “Salience and taxation: Theory and

evidenc,” *American Economic Review*, 99(4), 2009, pp. 1145~1177.
Gottfried, P. and W. Wiegard, “Exemption versus Zero Rating: a Hidden Problem of VA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3), 1991, pp. 307~328.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0,” 2020, 12.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검색일자: 2022. 5. 24.

_____,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
일자: 2022. 5. 2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6>, 검색일자: 2022. 6. 28.

e-나라지표, 「국세수입실적」,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124, 검색일자: 2022. 3. 7.

_____, 「국내총생산」,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36, 검색일자: 2022. 3. 7.

EUR-Lex, “32006L01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6L0112>, 검색일자: 2022. 6. 28.

OECD, Stat,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검색일자: 2022. 3. 7.

부 록

〈부표 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1	벼	0	3.44	3.77	2.79	2.08
2	맥류 및 잡곡	0	2.33	2.17	2.53	3.58
3	공류	0	1.91	1.77	1.95	2.42
4	감자류	0	2.19	2.15	2.26	3.70
5	채소	0	3.01	2.50	3.06	3.31
6	과실	0	2.96	2.27	2.44	2.36
7	화훼작물	1	10.39	10.32	10.28	10.24
8	약용작물	0	1.33	1.33	1.41	1.91
9	잎담배	0	1.90	1.67	2.08	1.99
10	천연고무	1	10.00	10.00	10.00	10.00
11	종자	1	10.28	10.26	10.33	10.40
12	기타 식용작물	0	1.29	1.35	1.52	1.90
13	기타 비식용작물	1	10.81	10.94	10.95	10.70
14	낙농	0	7.85	7.78	7.68	5.46
15	축우	0	7.75	7.07	7.67	7.90
16	양돈	0	6.61	6.59	7.47	8.43
17	가금	0	6.39	6.22	7.54	8.78
18	기타 축산	0	4.80	4.67	4.62	4.08
19	영림	1	10.14	10.15	10.15	10.13
20	원목	1	10.20	10.21	10.20	10.19
21	식용 임산물	0	2.27	2.54	2.67	2.27
22	기타 임산물	0	3.08	3.08	2.83	2.11
23	수산어획	0	5.51	5.72	5.74	5.76
24	수산양식	0	6.18	5.81	6.50	6.87
25	농림어업 서비스	1	10.28	10.30	10.32	10.62
26	무연탄	0	6.93	9.44	8.65	8.38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27	유연탄	1	10.00	10.00	10.00	10.00
28	원유	1	10.53	10.56	10.58	10.56
29	천연가스(LNG)	1	10.46	10.50	10.49	10.48
30	철광석	1	10.52	10.52	10.61	10.57
31	기타 비철금속광석	1	10.80	10.85	10.91	10.91
32	골재 및 석재	1	10.37	10.40	10.44	10.42
33	석회석	1	10.29	10.30	10.38	10.37
34	기타 비금속광물	1	10.83	10.88	10.70	11.21
35	도축육	0	6.91	6.49	7.19	7.56
36	가금육	0	6.32	6.21	7.05	7.59
37	육가공품	1	12.61	12.53	12.71	12.74
38	낙농품	1	13.20	13.10	13.15	12.49
39	수산물 가공품	1	12.24	12.32	12.38	12.33
40	수산동물 저장품	0	7.16	7.16	7.12	7.20
41	정곡	0	3.81	4.47	3.52	2.66
42	제분	0	4.24	4.22	4.01	4.67
43	원당	1	10.00	10.00	10.00	10.00
44	정제당	1	10.13	10.08	10.17	10.27
45	전분 및 당류	1	10.96	10.91	11.12	11.34
46	떡, 빵 및 과자류	1	11.27	11.29	11.25	11.27
47	면류	1	11.48	11.43	11.38	11.45
48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1	11.18	11.10	11.15	11.19
49	유지	1	11.46	11.46	11.45	11.54
50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	11.53	11.26	11.37	11.57
51	커피 및 차류	1	10.89	10.89	10.91	10.77
52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1	10.72	10.70	10.69	10.77
53	기타 식료품	1	11.47	11.47	11.45	11.51
54	사료	1	11.25	11.23	11.36	11.50
55	주정	1	11.05	11.14	11.19	11.57
56	소주	1	10.36	10.38	10.43	10.49
57	맥주	1	10.29	10.30	10.32	10.35
58	기타 주류	1	10.71	10.75	10.74	10.71
59	비알콜음료 및 얼음	1	10.65	10.62	10.64	10.65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60	담배	1	10.15	10.17	10.17	10.14
61	천연 및 화학섬유사	1	10.66	10.70	10.68	10.63
62	기타 섬유사	1	10.39	10.41	10.42	10.37
63	천연 및 화학 섬유직물	1	10.42	10.43	10.44	10.43
64	기타 섬유직물	1	10.37	10.38	10.39	10.44
65	편조원단	1	10.44	10.45	10.46	10.42
66	섬유표백 및 염색 임가공	1	10.52	10.52	10.55	10.56
67	직물제품	1	10.43	10.45	10.46	10.45
68	부직포 및 펠트	1	10.39	10.41	10.42	10.39
69	기타 섬유제품	1	10.43	10.44	10.50	10.56
70	봉제의류	1	10.39	10.40	10.41	10.37
71	편조의류	1	10.44	10.46	10.46	10.41
72	가죽의류	1	11.50	11.35	11.25	11.27
73	모피의류 및 모피제품	1	12.03	12.12	12.07	12.24
74	의복 관련 장신품	1	10.43	10.43	10.45	10.44
75	가죽	1	13.19	13.20	13.54	14.01
76	모피	1	12.17	11.97	11.84	11.88
77	가방 및 핸드백	1	10.61	10.58	10.59	10.57
78	신발	1	10.84	10.76	10.80	10.83
79	기타 가죽제품	1	11.22	11.27	11.13	11.08
80	제재목	1	10.31	10.32	10.35	10.35
81	합판	1	10.34	10.36	10.37	10.39
82	강화 및 재생목재	1	10.35	10.36	10.40	10.39
83	건축용 목제품	1	10.41	10.47	10.46	10.45
84	목재 용기 및 적재판	1	10.31	10.33	10.34	10.33
85	기타 목제품	1	10.50	10.55	10.54	10.51
86	펄프	1	10.44	10.38	10.47	10.84
87	인쇄용지	1	10.49	10.49	10.51	10.65
88	기타 원지 및 판지	1	10.57	10.67	10.61	10.60
89	골판지 및 골판지가공품	1	10.43	10.49	10.45	10.42
90	종이용기	1	10.40	10.45	10.44	10.43
91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	10.37	10.40	10.41	10.40
92	위생용 종이제품	1	10.36	10.42	10.43	10.51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93	기타 종이제품	1	10.34	10.38	10.42	10.39
9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	10.33	10.35	10.36	10.37
95	석탄코크스 및 석탄 관련 제품	0	8.04	8.13	7.65	7.74
96	연탄	0	13.08	14.69	12.04	11.92
97	나프타	1	10.46	10.50	10.53	10.51
98	휘발유	1	10.25	10.30	10.35	10.33
99	제트유	1	10.44	10.48	10.52	10.49
100	등유	1	10.35	10.39	10.44	10.42
101	경유	1	10.29	10.34	10.40	10.38
102	중유	1	10.40	10.44	10.49	10.47
103	액화석유가스	1	10.36	10.38	10.42	10.41
104	정제혼합용 원료유	1	10.49	10.53	10.57	10.55
105	윤활유 및 그리스	1	10.45	10.49	10.51	10.48
106	기타 석유정제제품	1	10.49	10.54	10.57	10.56
107	지방족 기초유분	1	10.44	10.44	10.49	10.47
108	방향족 기초유분	1	10.44	10.46	10.50	10.48
109	석유화학중간제품	1	10.44	10.45	10.48	10.47
11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	10.48	10.47	10.50	10.53
111	산업용 가스	1	10.32	10.35	10.35	10.35
112	기초무기화합물	1	10.38	10.44	10.44	10.47
113	염료, 안료 및 유연제	1	10.60	10.61	10.63	10.58
114	합성수지	1	10.37	10.39	10.43	10.42
115	합성고무	1	10.36	10.38	10.41	10.39
116	화학섬유	1	10.38	10.40	10.41	10.37
117	의약품	1	10.49	10.50	10.50	10.48
1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1	10.44	10.52	10.52	10.55
119	살충제 및 농약	1	10.52	10.55	10.58	10.58
120	도료	1	10.41	10.43	10.46	10.43
121	잉크	1	10.43	10.46	10.49	10.45
122	비누, 세제 및 치약	1	10.51	10.52	10.54	10.53
123	화장품	1	10.36	10.40	10.44	10.42
124	접착제 및 젤라틴	1	10.60	10.63	10.66	10.62
125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1	10.41	10.44	10.46	10.40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126	기타 화학제품	1	10.39	10.44	10.44	10.38
127	플라스틱 1차제품	1	10.36	10.41	10.41	10.37
128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1	10.43	10.51	10.52	10.47
129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1	10.39	10.43	10.43	10.42
130	운송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1	10.37	10.42	10.43	10.41
131	기타 플라스틱제품	1	10.38	10.42	10.43	10.39
132	타이어 및 튜브	1	10.39	10.40	10.44	10.43
133	산업용 고무제품	1	10.37	10.39	10.41	10.39
134	기타 고무제품	1	10.41	10.43	10.46	10.42
135	판유리 및 1차 유리제품	1	10.39	10.43	10.44	10.48
136	전자기기용 유리제품	1	10.29	10.33	10.31	10.36
137	산업용 유리제품(전자기기용 제외)	1	10.30	10.33	10.34	10.34
138	기타 유리제품	1	10.30	10.34	10.34	10.35
139	가정용 도자기	1	10.50	10.51	10.52	10.57
140	산업용 도자기	1	10.38	10.41	10.41	10.37
141	내화요업제품	1	10.52	10.57	10.55	10.59
142	건설용 비내화요업제품	1	10.61	10.69	10.68	10.59
143	시멘트	1	10.80	10.88	10.99	11.05
144	레미콘	1	10.54	10.57	10.61	10.61
145	콘크리트 제품	1	10.51	10.58	10.61	10.56
146	석회 및 석고제품	1	10.82	11.10	11.18	11.03
147	석제품	1	10.39	10.41	10.41	10.38
148	연마재	1	10.34	10.37	10.38	10.34
149	아스콘 및 아스팔트 제품	1	10.68	10.76	10.76	10.64
150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	10.38	10.42	10.43	10.47
151	선철	1	11.19	11.25	11.19	11.87
152	합금철	1	10.53	10.58	10.59	10.65
153	조강	1	11.39	11.52	11.33	11.58
154	철근 및 봉강	1	11.13	11.28	11.22	11.40
155	형강	1	10.56	10.62	10.60	10.62
156	선재 및 퀘조	1	10.63	10.70	10.71	10.75
157	중후판(두께 3mm 이상)	1	10.67	10.76	10.73	10.74
158	열연강판	1	10.71	10.77	10.78	10.78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159	강선	1	10.61	10.70	10.69	10.74
160	철강관	1	10.63	10.72	10.73	10.70
161	냉간압연강재	1	10.73	10.81	10.81	10.74
162	표면처리강재	1	10.59	10.66	10.68	10.61
163	기타 철강 1차제품	1	10.65	10.73	10.74	10.66
16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74	10.79	10.86	10.76
165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58	10.66	10.69	10.66
166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67	10.76	10.78	10.72
167	금은괴	1	10.57	10.64	10.66	10.63
168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1	10.47	10.58	10.57	10.54
169	동 1차제품	1	10.68	10.75	10.82	10.73
170	알루미늄 1차제품	1	10.56	10.64	10.67	10.66
171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	1	10.64	10.74	10.65	10.71
172	금속 주물	1	10.64	10.78	10.78	10.84
173	건축용 금속제품	1	10.47	10.52	10.53	10.46
174	구조물용 금속제품	1	10.38	10.43	10.43	10.40
175	금속제 탱크 및 압력용기	1	10.40	10.44	10.45	10.42
176	산업용 보일러 및 증기 발생기	1	10.49	10.54	10.56	10.52
177	금속 단조 및 아금제품	1	10.42	10.48	10.47	10.57
178	금속압형제품	1	10.35	10.37	10.38	10.35
179	금속처리	1	10.26	10.29	10.29	10.27
180	금속처리 가공품	1	10.33	10.35	10.36	10.35
181	가정용 금속제품	1	10.43	10.47	10.49	10.38
182	부착용 금속제품	1	10.36	10.39	10.40	10.45
183	공구류	1	10.30	10.33	10.31	10.40
184	나사 및 철선 제품	1	10.39	10.44	10.43	10.41
185	금속포장용기	1	10.36	10.40	10.42	10.43
186	기타 금속제품	1	10.33	10.37	10.40	10.40
187	개별소자	1	10.26	10.28	10.26	10.22
188	집적회로	1	10.22	10.23	10.21	10.18
189	LCD 평판 디스플레이	1	10.24	10.23	10.29	10.26
190	기타 전자표시장치	1	10.25	10.25	10.25	10.24
191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	1	10.31	10.37	10.38	10.36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192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	1	10.32	10.34	10.39	10.39
193	기타 전자부품	1	10.26	10.30	10.30	10.27
194	컴퓨터	1	10.29	10.26	10.32	10.26
195	컴퓨터 기억장치	1	10.31	10.30	10.30	10.27
196	컴퓨터 주변기기	1	10.32	10.31	10.34	10.29
197	유선통신기기	1	10.30	10.31	10.29	10.26
198	이동전화기	1	10.27	10.25	10.24	10.23
199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1	10.50	10.49	10.41	10.46
200	TV	1	10.29	10.29	10.34	10.25
201	영상기기	1	10.28	10.30	10.29	10.26
202	오디오 및 음향기기	1	10.31	10.36	10.36	10.34
203	의료용 기기	1	10.32	10.33	10.36	10.31
204	측정 및 분석기기	1	10.34	10.38	10.39	10.33
205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1	10.39	10.42	10.45	10.38
206	사진기 및 영사기	1	10.34	10.33	10.34	10.32
207	기타광학기기	1	10.29	10.27	10.27	10.27
208	시계	1	10.30	10.31	10.32	10.35
209	발전기 및 전동기	1	10.32	10.34	10.37	10.40
210	변압기	1	10.37	10.40	10.42	10.34
211	전기변환장치	1	10.33	10.36	10.37	10.32
212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1	10.35	10.38	10.40	10.36
21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1	10.33	10.36	10.36	10.31
214	전지	1	10.41	10.42	10.39	10.35
215	전선 및 케이블	1	10.48	10.52	10.55	10.53
216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1	10.35	10.38	10.38	10.31
217	주방용 및 난방용 전기기기	1	10.49	10.52	10.57	10.53
218	기타 가정용전기기기	1	10.36	10.39	10.40	10.39
219	전구 및 램프	1	10.46	10.50	10.51	10.47
220	조명장치	1	10.33	10.37	10.36	10.34
221	기타 전기장비	1	10.32	10.35	10.40	10.36
222	내연기관 및 터빈	1	10.38	10.40	10.42	10.43
223	펌프 및 압축기	1	10.43	10.46	10.48	10.44
224	밸브	1	10.35	10.39	10.40	10.41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225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1	10.34	10.38	10.39	10.37
226	산업용 운반기계	1	10.38	10.42	10.43	10.38
227	공기조절 장치 및 냉장 냉동 장비	1	10.43	10.47	10.48	10.42
228	공기 및 액체 여과기	1	10.39	10.40	10.43	10.49
229	사무용기기	1	10.28	10.29	10.31	10.29
230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1	10.36	10.38	10.40	10.35
231	농업용 기계	1	10.41	10.43	10.46	10.43
232	건설 및 광물처리 기계	1	10.39	10.43	10.45	10.43
233	금속가공용 기계	1	10.45	10.50	10.52	10.46
234	금형 및 주형	1	10.55	10.64	10.66	10.67
235	반도체 제조용 기계	1	10.29	10.32	10.31	10.24
236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1	10.33	10.36	10.36	10.35
237	음식료품 가공기계	1	10.38	10.40	10.41	10.42
238	섬유 및 의복가공 기계	1	10.38	10.41	10.45	10.43
239	산업용 로봇	1	10.39	10.45	10.44	10.31
240	제지 및 인쇄기계	1	10.34	10.37	10.39	10.29
241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	1	10.38	10.42	10.43	10.36
24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	10.34	10.38	10.40	10.38
243	승용차	1	10.35	10.38	10.40	10.38
244	버스	1	10.34	10.38	10.38	10.36
245	트럭	1	10.37	10.40	10.41	10.39
246	특장차	1	10.34	10.38	10.40	10.36
247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1	10.43	10.45	10.47	10.44
248	자동차용 엔진	1	10.39	10.40	10.42	10.42
249	자동차 부품품	1	10.43	10.47	10.48	10.44
250	강철제 선박	1	10.41	10.41	10.43	10.40
251	기타 선박	1	10.38	10.41	10.42	10.39
252	선박 수리 및 부품품	1	10.49	10.53	10.55	10.51
253	철도차량	1	10.41	10.40	10.43	10.43
254	항공기	1	10.35	10.42	10.40	10.38
255	모터사이클	1	10.47	10.48	10.47	10.42
256	기타 운수장비	1	10.33	10.35	10.38	10.34
257	목재 가구	1	10.39	10.41	10.43	10.42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258	금속 가구	1	10.44	10.47	10.48	10.49
259	기타 가구	1	10.40	10.40	10.40	10.38
260	장난감 및 오락용품	1	10.40	10.42	10.44	10.48
261	운동 및 경기용품	1	10.46	10.49	10.49	10.53
262	악기	1	10.40	10.40	10.42	10.43
263	문구용품	1	10.38	10.41	10.38	10.39
264	귀금속 및 보석	1	10.44	10.49	10.46	10.49
265	모형 및 장식용품	1	10.37	10.40	10.39	10.40
266	기타 제조업 제품	1	10.45	10.48	10.49	10.33
267	제조임가공서비스	1	10.35	10.37	10.39	10.32
26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1	10.23	10.26	10.26	10.27
269	수력	1	10.26	10.25	10.25	10.19
270	화력	1	10.26	10.27	10.33	10.32
271	원자력	1	10.21	10.29	10.36	10.33
272	자기발전	1	10.32	10.29	10.27	10.27
273	신재생에너지	1	10.28	10.42	10.56	10.51
274	도시가스	1	10.48	10.45	10.46	10.43
275	증기 및 온수 공급	1	10.23	10.22	10.30	10.29
276	수도	0	4.02	4.11	4.04	4.24
27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국공립)	0	3.83	3.70	4.27	3.60
27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산업)	1	10.14	10.13	10.14	10.17
279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국공립)	0	4.58	4.87	4.11	2.83
280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	1	10.33	10.42	10.38	10.38
281	자원재활용서비스	0	5.31	5.62	5.66	5.22
282	주거용 건물	1	10.35	10.38	10.36	10.36
283	비주거용 건물	1	10.34	10.37	10.36	10.35
284	건축보수	1	10.33	10.36	10.36	10.34
285	도로시설	0	5.80	5.82	6.00	6.00
286	철도시설	0	5.88	5.88	6.05	6.00
287	항만시설	0	5.98	6.00	6.27	6.43
288	하천사방	0	6.06	6.09	6.17	6.30
289	상하수도시설	0	5.75	5.77	5.91	5.85
290	농림수산토목	1	10.30	10.32	10.33	10.30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291	도시토목	1	10.31	10.35	10.36	10.35
292	환경정화시설	1	10.35	10.39	10.39	10.37
293	통신시설	1	10.24	10.26	10.27	10.25
294	전력시설	1	10.26	10.28	10.29	10.26
295	산업플랜트	1	10.29	10.31	10.31	10.27
296	기타 건설	1	10.46	10.50	10.51	10.47
297	도소매 및 상품증개서비스	1	10.38	10.39	10.40	10.40
298	철도운송서비스	0	3.42	4.26	4.32	4.08
299	도로여객운송서비스	0	4.96	5.16	5.54	5.29
300	도로화물운송서비스	1	10.31	10.34	10.36	10.34
301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서비스	0	5.59	6.27	6.63	6.54
302	외항운송서비스	0	8.64	8.50	8.74	8.66
303	항공운송서비스	1	10.41	10.45	10.45	10.41
304	육상운송보조서비스	1	10.27	10.28	10.30	10.23
305	수상운송보조서비스	1	10.38	10.42	10.41	10.37
306	항공운송보조서비스	1	10.17	10.18	10.18	10.16
307	하역서비스	1	10.43	10.47	10.50	10.49
308	보관 및 창고서비스	1	10.50	10.50	10.47	10.45
309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1	10.44	10.46	10.47	10.51
310	공영우편서비스	0	3.22	2.99	2.06	2.13
311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1	10.35	10.36	10.40	10.38
312	일반음식점	1	11.76	11.76	11.81	11.76
313	기타음식점	1	11.64	11.62	11.66	11.69
314	주점	1	10.97	10.97	11.01	10.95
315	비알콜음료점	1	10.63	10.54	10.61	10.64
316	숙박	1	10.42	10.46	10.47	10.46
317	유선통신서비스	1	10.34	10.39	10.41	10.38
318	무선 및 위성 통신서비스	1	10.27	10.29	10.31	10.28
319	통신 재판매 및 중개 서비스	1	10.31	10.32	10.34	10.32
320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	10.21	10.25	10.26	10.29
321	지상파 방송서비스	0	4.82	4.93	5.64	5.09
3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서비스	1	10.73	10.75	10.77	10.79
323	정보제공서비스	1	10.46	10.43	10.42	10.38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324	게임소프트웨어 출판	1	10.27	10.29	10.28	10.27
325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1	10.19	10.20	10.19	10.15
326	기타 IT서비스	1	10.21	10.23	10.21	10.19
327	신문 및 출판	1	10.45	10.44	10.45	10.44
328	영상·오디오품 제작 배급	1	10.36	10.37	10.37	10.36
329	영화상영	1	10.33	10.35	10.34	10.33
330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0	1.68	1.55	1.54	1.56
331	금융투자기관	0	2.09	1.83	1.94	1.95
332	기타 금융중개기관	0	4.52	4.64	4.80	4.60
333	생명보험	0	3.88	3.70	3.43	4.24
334	연금기금	0	2.10	1.68	1.75	1.47
335	비생명보험	0	4.61	4.85	4.63	4.65
336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	0	2.28	2.37	2.17	2.40
337	주거서비스	0	0.99	1.04	1.11	1.03
338	비주거용 건물 임대	1	10.25	10.27	10.26	10.27
339	부동산 개발 및 공급	1	10.38	10.41	10.40	10.47
340	부동산 관련 서비스	1	10.15	10.16	10.16	10.16
341	연구개발(국공립)	0	4.69	4.75	4.97	4.55
342	연구개발(비영리)	0	5.28	5.33	5.26	5.18
343	연구개발(산업)	0	3.57	4.16	3.95	2.23
344	기업 내 연구개발	0	3.55	3.66	3.69	3.65
345	법무 및 회계서비스	1	10.28	10.26	10.26	10.25
346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1	10.63	10.66	10.67	10.66
347	광고	1	11.08	10.99	11.25	11.09
348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1	10.39	10.43	10.44	10.43
349	공학 관련 서비스	1	10.31	10.32	10.33	10.30
350	과학기술서비스	1	10.23	10.26	10.25	10.23
351	기타 전문 서비스	1	10.30	10.32	10.31	10.31
352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1	10.17	10.19	10.22	10.22
353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조경서비스	1	10.16	10.17	10.15	10.15
354	인력공급 및 알선	1	10.16	10.17	10.17	10.18
355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1	10.27	10.29	10.26	10.25
356	중앙정부	0	2.91	2.97	2.87	2.82

〈부표 1〉의 계속

(단위: %)

번호	기본부문	면세 여부	2016	2017	2018	2019
357	지방정부	0	1.18	1.20	1.22	1.18
358	사회보험(국공립)	0	3.09	2.98	3.08	3.15
359	교육서비스(국공립)	0	2.34	2.36	2.25	2.27
360	교육서비스(비영리)	0	2.90	2.81	2.69	2.65
361	교육서비스(산업)	0	4.40	4.42	4.33	4.55
362	의료 및 보건(국공립)	0	4.22	4.01	4.05	4.35
363	의료 및 보건(비영리)	0	4.61	4.41	4.58	4.54
364	의료 및 보건(산업)	0	5.13	5.23	5.13	5.09
365	사회복지서비스(국공립)	0	3.40	3.64	3.85	3.62
366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0	3.44	3.43	3.57	3.52
367	문화서비스(국공립)	0	3.66	3.77	3.77	3.89
368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1	10.32	10.34	10.32	10.31
369	기타 문화서비스	0	4.05	4.22	4.04	3.98
370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1	10.40	10.42	10.44	10.37
371	스포츠 서비스	1	10.30	10.32	10.33	10.32
372	오락 서비스	1	10.64	10.66	10.66	10.66
373	산업 및 전문가 단체	0	5.69	5.74	5.68	5.63
374	기타 사회 단체	0	5.35	5.31	5.42	5.38
375	자동차 수리서비스	1	10.32	10.34	10.35	10.34
376	전자통신기기 및 가정용품 수리서비스	1	10.26	10.28	10.29	10.27
377	미용 관련 서비스	1	10.33	10.34	10.37	10.35
378	세탁	1	10.33	10.32	10.35	10.34
379	가사서비스	1	10.00	10.00	10.00	10.00
380	기타 개인 서비스	1	10.31	10.35	10.34	10.33
381	기타	1	12.46	12.58	12.08	12.07

주: 면세 여부에서 0은 부가가치세 면세, 1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2019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추정 비교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곡물구입비	멥쌀구입비	2,6589	4,4420
	찰쌀구입비	2,6589	4,4420
	맥류구입비	2,6589	4,4420
	두류구입비	2,4246	2,8530
	기타곡물구입비	3,5814	4,9938
곡물가공품구입비	밀가루구입비	4,6726	4,6054
	국수류구입비	11,4545	10,9076
	라면류구입비	11,4545	11,0003
	당면구입비	11,4545	10,9076
	두부구입비	2,4246	10,0024
	기타곡물가공품구입비	11,5141	10,9769
빵떡류구입비	케이크구입비	11,2676	10,0002
	식빵기타빵구입비	11,2676	10,9989
	떡구입비	11,2676	10,9616
육류구입비	쇠고기구입비	7,5612	9,9813
	돼지고기구입비	7,5612	9,9813
	닭고기구입비	7,5878	9,9993
	기타생육구입비	6,4102	8,1423
육류가공품구입비	소시지구입비	12,7446	10,0009
	햄베이컨구입비	12,7446	10,0009
	기타육류가공품구입비	12,7446	10,0009
신선수산물구입비	바다어류구입비	5,7591	5,0108
	연체동물류구입비	5,7591	5,0108
	갑각류구입비	5,7591	5,0108
	조개류구입비	6,3164	4,6853
	기타수산물구입비	6,3164	4,6853
	기타수산물구입비	6,3164	4,6853
염건수산물구입비	복어구입비	7,1960	5,0108
	굴비구입비	7,1960	5,0108
	마른멸치구입비	7,1960	5,0108
	마른오징어구입비	7,1960	5,0108
	간고등어구입비	7,1960	5,0108
	기타염건수산물구입비	7,1960	5,0108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기타수산동물가공구입비	어묵구입비	12,3350	10,9978
	맛살구입비	12,3350	10,9978
	수산동물통조림구입비	12,3350	10,3706
	젓갈구입비	12,3350	10,9978
	기타수산동물가공품구입비	12,3350	10,3706
유제품 및 알구입비	우유구입비	12,4923	9,9996
	분유구입비	12,4923	10,0022
	치즈구입비	12,4923	10,0022
	요구르트구입비	12,4923	10,0022
	두유구입비	10,6474	10,9091
	기타우유가공품구입비	12,4923	11,0005
	알가공품구입비	10,1453	10,2346
유지류구입비	참기름들기름구입비	11,5355	9,0228
	기타식물성식용유구입비	11,5355	9,0228
	버터기타유지류구입비	11,5355	9,0228
과일가공품구입비	사과구입비	2,3630	1,4085
	배구입비	2,3630	1,4085
	복숭아구입비	2,3630	1,4085
	포도구입비	2,3630	1,4085
	밤구입비	2,3630	1,4085
	감구입비	2,3630	1,4085
	감귤류구입비	2,3630	1,4085
	참외구입비	2,3630	1,4085
	수박구입비	2,3630	1,4085
	딸기구입비	2,3630	1,4085
	바나나구입비	2,3630	1,4085
	기타과일구입비	2,3630	1,4085
	과일가공품구입비	11,5721	10,0173
채소가공품구입비	배추구입비	3,3055	5,0473
	상추구입비	3,3055	5,0473
	시금치구입비	3,3055	5,0473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채소가공품구입비	양배추구입비	3.3055	5.0473
	미나리구입비	3.3055	5.0473
	깻잎구입비	3.3055	5.0473
	부추구입비	3.3055	5.0473
	무구입비	3.3055	5.0473
	당근구입비	3.3055	5.0473
	감자구입비	3.7035	5.0473
	고구마구입비	3.3055	5.0473
	도라지구입비	3.3055	5.0473
	콩나물구입비	3.3055	5.0473
	버섯구입비	3.3055	5.0473
	오이구입비	3.3055	5.0473
	생고추구입비	3.3055	5.0473
	호박구입비	3.3055	5.0473
	가지구입비	3.3055	5.0473
	토마토구입비	3.3055	5.0473
	파구입비	3.3055	5.0473
	양파구입비	3.3055	5.0473
	마늘구입비	3.3055	5.0473
	기타채소구입비	3.3055	5.0473
채소가공품구입비	11.5721	9.9781	
해소가공품구입비	김구입비	6.8737	9.0228
	미역구입비	6.8737	9.0228
	기타해조류구입비	6.8737	9.0228
당류과자류구입비	설탕구입비	10.2673	10.0395
	잼꿀조청구입비	11.3411	10.9768
	초콜릿구입비	11.2676	10.6739
	사탕젤리구입비	11.2676	10.0074
	껌구입비	11.2676	10.0074
	아이스크림구입비	12.4923	10.9998
	한과기타과자구입비	11.2676	10.0074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조미식품구입비	말린고추구입비	3,3055	4,9774
	참깨들깨구입비	3,3055	4,9774
	생강구입비	3,3055	4,9774
	소금구입비	8,6289	9,9944
	간장구입비	11,1862	10,0052
	된장구입비	11,1862	10,0052
	고추장구입비	11,1862	10,0052
	카레구입비	11,1862	10,0052
	식초구입비	11,1862	10,0052
	케첩구입비	11,1862	10,0052
	드레싱구입비	11,1862	10,0052
	훈합조미료구입비	11,1862	10,0052
	기타조미식품구입비	11,1862	10,0052
기타식품구입비	죽스프구입비	11,5141	10,9999
	이유식구입비	11,5141	10,9973
	김치구입비	11,5721	8,4036
	반찬류구입비	11,5141	9,9992
	즉석동결식품구입비	11,5141	10,9992
	기타미분류식품구입비	11,5141	10,9992
커피차구입비	커피구입비	10,7728	10,5681
	차구입비	10,7728	10,5681
주스기타음료구입비	과일아채주스구입비	10,6474	9,7243
	생수구입비	10,6474	10,1002
	기타음료수구입비	10,6474	10,1002
주류구입비	소주구입비	10,4947	10,5108
	와인과일주구입비	10,7077	10,9950
	맥주구입비	10,3531	10,9984
	막걸리구입비	10,7077	10,9950
	양주구입비	10,7077	10,9950
	기타주류구입비	10,7077	10,9950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담배구입비	담배구입비	10.1369	10.9910
직물및외의구입비	남성용외의구입비	11.0725	10.9116
	여성용외의구입비	11.0725	10.9116
	운동복구입비	10.3711	11.5271
	아동용외의구입비	11.0725	11.9005
	교복구입비	10.3711	11.5271
	직물기타외의구입비	11.0725	10.9116
내의구입비	남자내의잠옷구입비	10.3711	11.5271
	여자내의잠옷구입비	10.3711	11.5271
	아동용내의구입비	10.3711	11.5271
기타의복구입비	양말스타킹구입비	10.4352	10.3782
	모자구입비	10.4352	10.9945
	넥타이구입비	10.4352	10.9945
	실류기타의복관련품구입비	10.5311	10.7256
의복관련서비스구입비	의복수선세탁료	10.3359	10.0023
	기타의복관련서비스이용금액	10.3286	10.0086
신발구입비	아동화구입비	10.8313	10.9004
	구두구입비	10.8313	10.9004
	운동화구입비	10.8313	10.9004
	기타신발구입비	10.8313	10.9004
신발서비스구입비	신발관련서비스이용금액	10.3286	10.0028
실제주거비구입비	월세	1.0255	3.3668
	기타주거비	1.0255	3.3668
주택유지수선구입비	수선재료구입비	10.3993	10.2169
	설비수리서비스이용금액	10.3286	10.2652
상하수도폐기물처리비	상하수도료	3.9192	9.5147
	급탕비	10.2865	9.9175
	쓰레기처리금액	2.8307	9.9524
기타주거관련서비스구입비	공동주택관리비	5.5896	4.9937
	기타주거서비스금액	10.1537	10.0965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연료비구입비	전기요금	10,3249	10,6733
	도시가스연료비	10,4299	10,0049
	LPG연료비	10,4147	10,0014
	등유구입비	10,4238	10,0049
	연탄연료비	11,9212	10,9729
	공동주택난방비	10,2865	10,0005
	경유기타연료비	10,3339	10,9962
가구조명구입비	장롱구입비	10,4216	10,7522
	화장대구입비	10,4216	10,7522
	침대구입비	10,4216	10,7522
	장식장구입비	10,4216	10,7522
	소파구입비	10,3785	10,7522
	책상구입비	10,4286	10,8478
	의자구입비	10,4286	10,8478
	식탁식탁의자구입비	10,4216	10,3028
	조명기구구입비	10,4029	10,3028
	밥상기타가구구입비	10,4000	10,2201
실내장식구입비	카페트구입비	10,4539	10,9997
	기타실내장식품구입비	10,4837	10,2771
가구조명장식서비스 이용금액	실내장식관련서비스금액	10,3286	10,2609
가정용섬유구입비	침구류구입비	10,5049	10,4514
	수건구입비	10,5049	10,4514
	커튼구입비	10,5049	10,4514
	기타가정용섬유구입비	10,5049	10,4514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금액	10,3286	10,1023
가전가정용기기구입비	전기밥솥구입비	10,5283	10,6733
	가스전자레인지구입비	10,5283	10,6733
	일반냉장고구입비	10,3099	10,6733
	김치냉장고구입비	10,3099	10,6733
	정수기구입비	10,3883	10,5670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가전가정용기기구입비	에어컨선풍기기구입비	10.4583	10.2949
	난로온풍기기구입비	10.5283	10.5670
	공기청정기가습기기구입비	10.3883	10.6733
	세탁기기구입비	10.3883	10.6733
	식기세척기기구입비	10.3883	10.6733
	진공청소기기구입비	10.3883	10.7967
	기타가전가정용기기구입비	10.3883	10.7967
가전관련서비스이용금액	가정용기기가전서비스금액	10.2732	10.7967
가사용품구입비	식기류구입비	10.3814	10.3721
	컵다기구입비	10.5656	10.3721
	솔과램비구입비	10.3814	10.0004
	후라이팬구입비	10.3814	10.0004
	칼수저류구입비	10.3814	10.0004
	기타주방용품구입비	10.3839	10.9974
가정용공구기타구입비	가정용전동공구구입비	10.4027	10.1211
	설비관련기구구입비	10.4027	10.1211
	건전지구입비	10.3528	10.2684
	기타소형공구가사용품구입비	10.4027	10.1211
가사소모품구입비	세탁용세제구입비	10.5261	10.6023
	세탁청소용구구입비	10.3863	10.0007
	전구구입비	10.4666	10.2609
	주방청소용세제구입비	10.5261	10.0895
	살충약품용품구입비	10.3841	10.7953
	기타가사소모품구입비	10.3863	10.7953
	가사서비스금액	식품관련서비스금액	10.0000
	가사도우미급여	10.0000	9.9988
의약품구입비	조제양약구입비	4.5404	9.8216
	판매양약구입비	10.4810	9.8216
	한약한약재구입비	7.5107	9.8273
	인삼구입비	10.7691	9.8586
	영양보조제구입비	10.7691	9.8586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의료용소모품구입비	보건의료소모품구입비	10.4810	10.0733
보건의료용품기구구입비	안경콘택트구입비	10.2653	10.0007
	기타보건의료기구구입비	10.3088	10.2545
외래의료서비스이용금액	일반병의원외래진료비	4.4457	6.9925
	한방병원외래진료비	4.4457	9.9662
치과서비스이용금액	치과외래진료비	4.4457	8.8889
기타의료서비스이용금액	기타보건의료서비스이용금액	4.4457	3.0176
입원서비스이용금액	병원입원치료비	4.4457	6.9925
자동차구입비	신차구입비	10.3767	10.2017
	중고차구입비	10.3767	9.3206
기타운송기구구입비	오토바이구입비	10.4214	10.0018
	자전거구입비	10.3355	10.0012
운송기구유지수리비	부품관련용품구입비	10.4432	10.2142
	유지수리비	10.3354	10.0421
운송기구연료비	휘발유연료비	10.3294	10.4702
	차량용경유연료비	10.3787	10.4702
	차량용LPG연료비	10.4147	10.0001
	기타연료비	10.5616	10.4702
기타개인교통서비스이용금액	운전교습비	4.5538	3.3333
	주차요금	10.2316	9.9973
	통행료	5.2852	9.1805
	기타개인교통비	10.3784	9.9874
철도운송금액	기차비	4.0792	4.9937
	지하철이용금액	4.0792	4.9937
육상운송금액	시내버스이용요금	5.2852	4.9735
	시외버스이용요금	5.2852	4.9735
	택시이용금액	10.5084	10.0025
기타운송금액	항공요금	10.4101	10.2879
	교통카드이용금액	5.2852	9.4471
	기타여객서비스이용금액	10.5084	8.7827
기타교통관련서비스이용금액	일반화물운송보관금액	7.2105	8.0251
	이사화물운송보관료	7.2105	8.0251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우편서비스이용금액	우편서비스이용금액	2,1301	0.0303
통신장비구입비	일반전화기기구입비	10.2566	10.0003
	휴대전화기기구입비	10.2285	10.0151
통신서비스이용금액	일반전화요금	10.3830	10.0006
	휴대전화요금	10.3026	10.0002
	인터넷이용금액	10.2804	10.0006
	기타통신관련비	10.2852	10.1289
영상음향기기구입비	텔레비전구입비	10.2535	10.1356
	기타영상음향기기구입비	10.3045	10.1493
사진광학장비구입비	사진광학장비구입비	10.3191	10.2550
정보처리기기구입비	정보처리기기구입비	10.2755	10.9949
기록매체구입비	기록용매체이용금액	10.2892	10.4147
영상음향정보기기수리비	영상정보처리서비스금액	10.3286	10.9988
내구재구입비	오락운동내구재구입비	10.5318	11.0087
악기구입비	악기구입비	10.4291	10.4152
오락문화내구재유지수리비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이용금액	10.4643	10.9991
장난감취미용품구입비	장난감구입비	10.4777	10.9913
	게임취미용품구입비	10.4777	10.9913
캠핑운동관련용품구입비	등산낚시사냥용품구입비	10.5318	10.9997
	운동용품구입비	10.5318	10.9937
	캠핑운동용품서비스금액	10.4920	10.0004
화훼관련용품구입비	원예용품구입비	10.4676	10.1958
애완동물관련물품구입비	애완동물관련물품구입비	11.4995	11.0099
화훼애완동물서비스 이용금액	애완동식물관련서비스이용금액	10.3286	11.0000
운동오락서비스이용금액	운동시설이용금액	10.3198	10.9987
	노래방이용금액	10.6554	10.0048
	PC방이용금액	10.6554	10.0896
	기타오락시설이용금액	10.6554	10.9834
	운동경기관람료	10.3198	10.0027
	오락용품대여료	10.6554	10.9834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문화서비스이용금액	공연극장관람비	10.3122	10.0004
	관람시설이용금액	3.8876	6.5386
	독서실이용금액	4.5538	5.3503
	문화강습비	3.9761	2.9835
	컨텐츠구입비	3.9761	2.9835
	방송수신료	7.9368	9.9626
	기타문화서비스이용금액	3.9319	2.9835
복권구입비	복권구입비	3.8876	8.1809
서적구입비	참고서학습교재구입비	10.4375	14.0887
	중고생교재구입비	10.4375	14.0887
	기타서적구입비	10.4375	14.0887
기타인쇄물구입비	신문보기시간수	10.4375	9.9991
	잡지기타인쇄물구입비	10.4375	9.9991
문구구입비	종이문구류구입비	10.3855	10.2295
	필기미술용품구입비	10.3855	10.2295
	기타문구류구입비	10.3855	10.2295
단체여행경비	국내단체여행비	7.3157	9.7255
	국외여행비	7.3157	9.7255
초등교육비	유치원교육비	2.4610	4.4444
	초등학교교육비	2.4610	4.4444
중등교육비	중학교교육비	2.4610	4.4444
	고등학교교육비	2.4610	4.4444
고등교육비	전문대학교육비	3.1586	4.9905
	대학교육비	3.1586	4.9905
	대학원교육비	3.1586	4.9905
학생학원교육비	입시보습학원비	4.5538	4.9924
	음악학원비	4.5538	4.9924
	미술학원비	4.5538	4.9924
	운동학원비	4.5538	4.9924
	직업준비학원비	4.5538	4.9924
	방문학습지구입비	4.5538	4.9924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학생학원교육비	체험교육비	4.5538	4.9924
	기타학원비	4.5538	4.9924
	개인과외비	4.5538	4.9924
성인학원비	성인직업학원비	4.5538	5.0001
	외국어학원비	4.5538	5.0001
	운동교양교육구입비	4.5538	5.0001
기타교육비	학교보충교육비	3.1586	4.4444
	평생교육원교육비	3.6006	4.9924
	국내연수교육비	3.1586	4.9905
	국외연수비	3.1586	4.9905
식대	외식비	11.7582	13.5136
	단체제공식대	11.7582	13.5136
	주점커피숍구입비	11.3207	10.3893
숙박비	호텔여관콘도숙박비	10.4644	10.2298
	기타숙박시설이용금액	10.4644	10.2298
	기타주거시설이용금액	10.4644	10.2298
이미용서비스이용금액	목욕료	10.3522	10.2287
	이미용료	10.3522	10.2313
	기타이미용서비스이용금액	10.3404	10.2313
이미용기기구입비	이미용기기구입비	10.3883	10.1108
위생이미용용품구입비	칫솔구입비	10.3863	11.0132
	치약구입비	10.5261	10.2287
	세면비누구입비	10.5261	10.7572
	샴푸린스구입비	10.5261	10.7572
	화장지구입비	10.5104	10.0853
	화장품구입비	10.4165	10.2287
	기타이미용용품구입비	10.3841	10.1108
시계장신구구입비	시계류구입비	10.3480	10.2292
	장신구구입비	10.4884	10.2245
기타개인용품구입비	가방구입비	10.5723	10.1931
	종교용품구입비	10.4330	8.9186
	혼례장제례용품구입비	10.4330	10.2300

〈부표 2〉의 계속

(단위: %)

가계동향조사 지출항목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출항목		유효세율	유효세율
기타개인용품구입비	기타개인용품구입비	10.4330	10.2300
	개인용품서비스이용금액	10.3286	10.3249
복지시설비용금액	산후조리원이용금액	5.0906	3.3171
	보육료	2.4610	5.3100
	기타사회복지이용금액	3.5723	3.3171
보험료	보장성보험종신보험료	4.2449	8.4390
	화재보험료	4.6467	9.9853
	연금보험료	1.4657	3.7245
	운송관련보험료	4.6467	7.6423
	건강관련보험료	4.6467	5.1326
기타금융구입비	금융수수료	2.4041	6.1801
기타서비스금액구입비	부동산수수료	10.1590	10.3698
	일반수수료	10.3286	10.4213
	법무행정수수료	10.2546	10.8646
	응시료	10.3286	10.3456
	혼례장제례비	5.8244	10.0364
	팁기타서비스지불금액	10.6450	10.8534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 소비 지출의 과·면세 여부

구분	과세	면세
곡물	X	O
곡물가공품	O	X
빵떡류	O	X
육류	X	O
육류가공품	O	X
신선수산동물	X	O
염건수산동물	X	O
기타수산동물가공	O	X
유제품 및 알	△	△
유지류	O	X
과일가공품	O	X
채소가공품	O	X
해조가공품	O	X
당류과자류	O	X
조미식품	X	O
기타식품	△	△
커피 차	O	X
주스 기타음료	O	X
주류	O	X
담배	O	X
직물 및 외의	O	X
내의	O	X
기타의복	O	X
신발	O	X
신발서비스	O	X
실제주거비	X	O
주택유지수선	O	X
상하수도폐기물	O	X
기타주거관련서비스	O	X
연료비	O	X
가구조명	O	X
실내장식	O	X
가구조명장식서비스	O	X
가정용섬유	O	X

〈부표 3〉의 계속

구분	과세	면세
가전가정용기기	○	×
가전관련서비스	○	×
가사용품	○	×
가정용공구	○	×
가사소모품	○	×
가사서비스	○	×
의약품구입	△	△
의료용소모품	○	×
보건의료용품기구	○	×
외래의료서비스	△	△
치과	△	△
기타의료	△	△
입원	△	△
자동차구입	○	×
기타운송기구구입	○	×
운송기구유지수리	○	×
기타개인교통서비스이용 (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비 등)	○	×
철도운송	△	△
육상운송	△	△
기타운송	○	×
기타교통관련서비스	○	×
우편서비스이용	△	△
통신장비구입	○	×
통신서비스이용	○	×
영상음향기기구입	○	×
사진광학장비구입	○	×
기록매체구입	○	×
영상음향정보기기수리	○	×
내구재구입	○	×
악기기구구입	○	×
오락문화내구재유지수리	○	×
장난감취미용품구입	○	×
캠핑운동관련용품구입	○	×

〈부표 3〉의 계속

구분	과세	면세
화훼관련용품구입	○	×
애완동물관련물품구입	○	×
운동오락서비스이용	○	×
문화서비스이용	×	○
복권구입	×	○
서적구입	×	○
기타인쇄물구입	×	○
문구구입	○	×
단체여행경비	○	×
정규교육비	×	○
초등교육비	×	○
중등교육비	×	○
고등교육비	×	○
학원보습교육비	×	○
학생학원교육비	×	○
성인학원비	×	○
기타교육비	△	△
식대	○	×
숙박비	○	×
이미용서비스	○	×
이미용기기구입	○	×
위생이미용용품구입	○	×
시계장신구구입	○	×
기타개인용품구입	○	×
복지시설비용	○	×
보험료	×	○
기타금융구입	×	○
기타서비스금액구입	×	○

자료: 저자 작성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정재호 · 정다운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새롭게 각종 공제제도 등이 포함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좀 더 정확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고자료를 활용한 유효세율 크기가 기존의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실제 과거에 포착하지 못한 세 부담 전가의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세 부담 전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크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정부 정책으로 세 부담이 일부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품목별로 저소득 계층 등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의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Study on the Estimation of Effective VAT Rates Change

Jaeho Cheung and Dawoon Jung

This study analyzed the VAT burden of consumers by estimating the actual effective VAT rate. To improve accuracy, this study used the VAT report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includes actual VAT amounts paid by consumers.

The size of the effective VAT rate using the VAT report data was overestimated when using the existing metho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existing method could not capture the transfer of tax burden between suppliers.

Although the actual transfer of tax burden is much larger than the estimation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hat the consumer's VAT burden has been partially removed by government's VAT policies and deduction systems.

Therefore, the government's VAT policy reducing the regressiveness of VAT for relatively low-income class may be more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VAT burden of consumers by estimating the effective VAT rate, not the nominal VAT rate. To estimate the more accurate effective VAT rate, this study used the VAT report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includes VAT amounts actually paid by consumer.

The size of the effective VAT rate using the VAT report data was estimated to be larger than the effective VAT rate using the existing method.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method to estimate effective VAT rate may ignore (may not capture) the transfer of the tax burden between the suppliers.

Although the actual transfer of the tax burden is much larger than the estimation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hat the VAT burden of consumers has been partially reduced due to government's VAT policies such as various deduction systems.

Therefore, the government's VAT policy reducing the regressiveness of VAT for the relatively low-income class may be more important.

저자약력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다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학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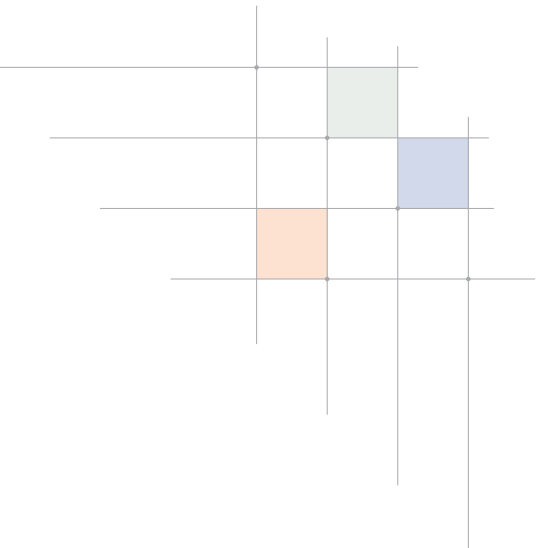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2-03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발행	행	2022년 12월 30일
저자	자	정재호 · 정다운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t.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14,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I S B N		979-11-6655-183-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9 791166 551833
ISBN 979-11-6655-183-3